



통일부

북한 시장화가 주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 시장제도의 전개, 시장경험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

박찬홍

북한인권정보센터

제1장 서론	1
제2장 북한의 시장 개관 및 정책과 법제의 의의	7
제3장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	17
제4장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61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5
[부록]	95

표 목차

<표 1-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6
<표 2-1> 조사 대상 문헌의 주요 서지사항	9
<표 3-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8
<표 3-2> 시기별 농민시장의 개설 빈도 변화	25
<표 3-4> 상업법 전후 대비(1992년 제정 및 1999년 개정법)	28
<표 3-5> 상업법 전후 대비(2002년 및 2004년 개정법)	35
<표 3-6> 북한의 쌀 가격 국제 비교	39
<표 3-7> 2008-2009년간 시장 단속 일지	41
<표 3-8> 상업법 전후 대비(2004년 및 2010년 개정법)	50
<표 4-1> 기존연구의 서지사항	62
<표 4-2> 장사경험	64
<표 4-3>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 1순위	68
<표 4-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73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전개 방향	5
<그림 3-1> 시장정책의 전개에 따른 시기 구분	20
<그림 3-2>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1970년-1990년대)	30
<그림 3-3>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2000년-2004년)	38
<그림 3-4>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2005년-2011년)	52
<그림 3-5> 북한의 시장 가격과 환율 추이	54
<그림 3-6>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2012년-현재)	60

요 약 문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시장을 찾게 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주의 상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예외적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이 상품유통의 주된 경로로 재등장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주민의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가 종래에 시장을 계획경제의 회복 즉, 체제유지를 위한 형식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데 대하여 후자는 삶의 영위라는 실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계획의 공백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본주의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시장을 통해서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전개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평행적 또는 상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북한 시장화 논의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과 법제가 주민의 사회경험과 혼재하여 주민의식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전개해 온 시장 정책과 법제, 그리고, 주민의식 변화를 주요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장 정책 및 제도, 시장경험의 축적이 북한 주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시장화 전개를 전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제도와 시장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북한에서 정책과 법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 정책과 제도가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시계열화 하여 관찰하였다. 한편, 시장 경험의 증가와 위와 같은 시장 정책과 제도가 주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면담기록을 조사하고,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장 경험의 증가와 시장 정책과 제도의 전개 과정에서 주민의식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일반화된 신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화된 신념은 북한 당국의 반(反) 시장적 조치가 있을 경우 집단적 저항이라는 행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 체제 유지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의 의식변화는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통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결부

하여 향후 북한의 시장화 전개를 예측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앞으로 전개될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북한 당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북한 당국이 적어도 2009년 화폐개혁과 같은 반(反)시장적 조치를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라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과 북한 당국의 시장 활용이라는 위로부터의 움직임이 상호 작용하여 그동안의 공식화된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도의 수립과 적용은 사회변화와 밀접하게 상관된 하나의 사회적 절차에 불과하며, 제도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사회변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시장화에서 제도적 수정이나 개혁 수준의 변화는 다른 사회적 조건의 변화로 확산되는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요용어 : 북한 시장화, 북한 주민, 시장경험, 의식변화, 시장정책, 시장제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 체제 운영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시장을 찾게 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주의 상업 체제가 확립된 이후 예외적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이 상품유통의 주된 경로로 재등장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 조치’라 한다) 이후 2003년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그동안 유지해오던 시장 기능의 축소 기조를 제도적으로 완화하였다.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상업 체제에 의한 상품공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자, 그 이면에 시장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화폐개혁은 ‘비사회주의적’ 불법행위의 만연, 계획에 의하지 않는 시장 확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판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는 사회적 요인 즉, 시장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축적하고 있던 대다수 북한 주민의 저항에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기에 집중되고 있는 소위 ‘6.28조치’나 ‘5.30조치’와 같은 경제정책이 시장화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발견되는 이 같은 경제현상들은 ‘시장’에 대한 주민의 의식변화와도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시장 인식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상업에서 시장의 소극적 역할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장은 상품유통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상품공급 능력이 저하될 경우에는 국가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통제기제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대상이다. 반면, 시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당국의 시각과 대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이후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지정한 행위 예컨대, 매대의 사적인 거래, 매대 이외에서 장사하는 행위, 시장 관리자에 대한 뇌물공여도 일상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은 생존을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돈 벌이의 매개 장소가 되고 있다. 즉, 북한 당국에 의한 계획의 공백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본주의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시장을 통해서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근자에 들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에 따라 북한 당국도 시장을 통한 재정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시장 인식을 수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 일부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역할 부여는 시장경험 축적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맞물려 그동안 북한 당국의 공식적 시장 인식을 제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사례를 연상케 한다. 이들 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현재 북한의 시장화 진행 과정과도 유사하다. 특히, 급진적 체제전환을 실시하였던 러시아와 동유럽국가 보다는 점진적 제도 변화를 통한 체제이행을 실시하였던 중국 또는 베트남의 사례에 근접해 있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경우 중국을 모델로 하는 체제 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가 그동안 폐쇄에서 개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사회현상인 만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 그리고 시장경험 축적에 따른 주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2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1. 기존연구 검토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매년 세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2000년 중반 이전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에 중점을 둔 시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오다가 2000년 중반 이후 연구 분야와 심도 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¹⁾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등 시장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거나, 체제전환국의 시장화 경험과 비교, 법제도 연구, 시장화와 관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과 ‘시장’을 논문 주제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 총 59편을 전수 조회한 결과이다.

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적 현상 분석, 북한 지역별 심층 연구를 통하여 북한 시장화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 시장화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종규(2014)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규(2014)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 관한 연구의 주요 쟁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 첫째, 시장과 계획경제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시장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둘째, 정량분석을 통해 추정된 시장규모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셋째, 시장화가 북한 경제 및 사회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향후 북한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서 인용한 쟁점 분류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진전과 정책 및 제도의 전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향후 북한의 시장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을 담지하고 있는 시장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요 관찰 대상으로 함으로써 북한의 시장화 논의에 제도적 관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 당국’을 주어로 하는 시장화를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 논의에서 북한 주민의 가치관 내지 의식의 변화와 같은 내재적 변화를 초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창희(2009)는 북한 주민들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시장화라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하여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시장화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조정아 외(2010)는 북한 주민 의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관점전환학습’의 측면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연관시켜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주제영역을 개인 주체의 내면적, 심리적 영역과 국가의 통제와 주민의 대응, 그리고 사회변화가 가져오는 경험의 확장과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가 향후 북한의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시도는 확인하기 어렵다. 1990년대 북한 시장의 자생적 특성으로부터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이 대립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³⁾

2) 이종규, “시장 및 비공식부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p.230.

3) 한재현(2015)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까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국내연구가 “계획과 시장의 불안한 동거 혹은 대결적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경제론’ 혹은 ‘달레마론’... 시장경제로의 진화 혹은 이행(transition)론적 위상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

환언하면, 북한 당국의 통치 기제를 배제한 채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만으로 북한의 시장화 전개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관찰대상으로 채택하는 한편, 북한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변화도 관찰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시장 경험 증가와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에 따라 주민의식의 변화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시장’은 계획경제와 대조되는 ‘시장경제’의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관찰 대상이 생산과 소비, 대외무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장’은 장소적 의미 즉, 상거래가 발생하는 장소로 그 관찰 범위를 한정하고, 그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주민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인 북한의 시장, 그리고 정책과 법제에 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다. 사회주의 상업체계를 기초로 북한에서 시장에 관한 개념과 시장 기능을 정리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정책과 법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민의식 변화에 주는 영향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북한의 정책과 법제의 의미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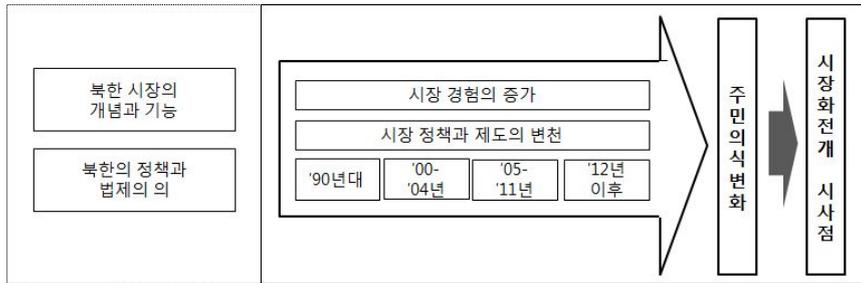
제3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동향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특히,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주요 내용들의 전개 과정을 시계열화 하여 관찰한다. 시장화 진전에 따라 주민들의 시장경험 증가할 것이며,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와 함께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기성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장은 북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9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실제 시장화 추이를 시기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그 시기별 시장 정책과 법제 변화의 특징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의식에 관한 기존연구의 면담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 북한 당국의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변화가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다.

결론부에서는 본론의 연구를 기초로 향후 북한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변화, 그리

적하고 있다.; 한재현, “북한의 시장화와 통치 - ‘국가 대 시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사회와 역사』, 제105집(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15), p.391.

고 주민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전개 방향을 도해화하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본 연구의 전개 방향

3.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북한 문헌을 비롯하여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자료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대상 북한 문헌에는 전집 및 선집류, 신문류, 논문류, 사전류, 교과서류, 그 밖에 법전과 연감 등을 포괄한다. 김일성, 김정일 전집 및 선집(조선로동당출판사)에 게재된 내용과 조선노동당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관련 기사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1990년 이후 김일성종합대학학보(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정치법률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 논문류를 조사하고자 한다. 사전류로 경제학 소사전(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 백과전서(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와 교과서류로 정치 경제학 교과서(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조선로동당출판사)을 조사한다. 그 밖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법률출판사), 조선중앙연감(조선중앙통신사) 등 기타 문헌을 참고한다.

2) 면접조사 등

시장 경험의 축적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기록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으

로써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보완하고자 한다.4)

심층면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조사대상 문헌들은 면담대상자 선정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통한 연구들은 피면담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직업 등을 안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접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들 문헌에서 면담자료를 취합·조사하고,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본 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동일하게 안고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면담자료들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정리된 것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면담기록의 표본선정의 편파(selection bias) 오류를 일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폭넓은 설문조사의 결과치는 본 연구에서 주민의식의 변화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던 심층면담의 피면담자 인적 사항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사례 번호	성별	나이	탈북연도	북한내 거주지	북한내 직업	학력
1	남성	40대	2015	함경북도	농장원	고등중졸
2	남성	30대	2015	함경북도	선장	전문대졸
3	여성	30대	2015	함경북도	간호원	고등중졸
4	여성	50대	2015	함경북도	미용사	고등중졸
5	남성	50대	2015	함경북도	초급당비서	대졸
6	남성	30대	2015	함경북도	노동자	전문대졸
7	남성	30대	2015	함경북도	의사	전문대졸
8	남성	40대	2014	양강도	무역회사 노동자	고등중졸
9	남성	20대	2015	양강도	농장원	전문대졸
10	남성	40대	2016	함경북도	용접공	고등중졸
11	남성	30대	2015	함경북도	한의사	대졸
12	남성	50대	2015	함경북도	농장원	고등중졸

4) 조정아 외(2010)는 질적 연구의 수준은 ‘타당도’가 아니라 ‘이해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일반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의 재구성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한 측면에 대한 ‘상호주관적 설득력’을 추구한다.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에 관한 모종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정아 외, 앞의 책, p.9.

제2장 북한의 시장 개관 및 정책과 법제의 의의

본 장에서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상업체계 형성과정에서 확립하고 있는 시장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정책과 법제의 의의를 북한 문헌을 통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북한의 정책과 법제가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설명할 것이다.

제1절 북한 시장에 대한 개관

1. 서 설

북한 당국이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한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연구자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관련 연구자들은 북한의 경제 현상으로 ‘시장화’에 주목하면서 시장화를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로 이해하거나, 비공식 부문의 시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 시장화라는 사회현상 분석을 위해 다른 사회주의국가 등에서 확인되었던 시장화의 일반적 개념을 정리하거나, 북한 시장의 변천 과정을 각각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시장은 사회주의 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시장화에 관한 논의에 앞서 시장에 대한 개념과 기능 등에 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 문헌을 중점 검토한다. 검토 대상이 되는 북한 문헌은 북한의 공식견해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북한 주민의 시장 인식이나, 불법적 시장현상 등과 같은 비공식적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체(政體)의 시장 인식은 시장 정책과 법제의 형성과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과 관련하여 북한 문헌에 나타난 시장의 개념과 ‘사회주의 상업’의 내용,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살펴본다.

2. 시장의 개념과 ‘사회주의 상업’

1) 시장 개념에 관한 기초 고찰

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체제에서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 않다. 즉, 시장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거나,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전자는 시장의 구체적 공간으로서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쨌든 양자 모두는 시장을 “상품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의 영역”을 의미한다. 한편 상업은 사전적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상업이 시장의 기능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서 상업체제의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품가격 등이 결정되며, 상업은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 메커니즘에 따라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반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능이 자본가의 탐욕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천착하여 동 기능을 국가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계획에 의하여 상품가격 등을 결정하며, 상업은 거래의 실현에만 기능할 뿐이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기존연구는 흔히 이중경제론적 시각으로 북한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즉, 북한의 시장을 계획경제 밖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인 경제영역’ 또는 ‘제2경제(second economy) 영역’으로 설명하며, 이를 다시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영역’과 ‘불법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이 계획경제 밖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북한의 시장을 계획경제 밖에서 행해지는 암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시각도 확인된다.⁶⁾ 후자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북한에서 시장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며, 시장화 진전은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한 딜레마적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 계획경제 밖에 존재하지만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혼재한다고 보는 시각에 따르면, 시장은 여전히 북한 당국의 통제 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로 진전시키는데 적합하다.

5)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338-343; 임강택, 『북한 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9-19;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9-18.

6) 일부 논문에서 북한의 시장을 2000년초 종합시장 허용에 따라 합법화, 공식화된 것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불법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18권2호(서울: 북한연구학회, 2014), p.100; 김창희,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 경제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4권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0), p.52.

북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기에 앞서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경우 상품의 거래 영역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에서 ‘사회주의 상업’, ‘상품유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전류와 교과서류를 제외한 북한 문헌에서 ‘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을 직접 언급하는 문헌의 내용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선전과 자본시장의 폐해 비판에 국한되어 있다.⁷⁾

따라서 이하에서는 ‘시장’과 ‘상품유통’을 핵심단어로 북한의 사전류 문헌을 조사하고, ‘사회주의 상업’을 핵심 단어로 북한의 교과서류 문헌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시장’과 ‘상품유통’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주의 상업’에 관한 서술을 검토한다.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각각 핵심 단어에 대한 개념 및 의미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문헌들은 그 발간 시점의 횡단면 정보(cross-sectional information)를 주로 담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 변화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다른 시기에 발행된 유사 문헌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종단면 정보(longitudinal information)도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문헌의 주요 서지사항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조사 대상 문헌의 주요 서지사항

[사전류]

발행인(출판사)	책 제목	발행일자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학 소사전	1960. 11. 20.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1970. 04. 15.
	경제사전(2)	1970. 08. 15.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1)	1982. 10. 10.
	백과전서(3)	1983. 03. 10.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1985. 05. 10.
	경제사전(2)	1985. 12. 28.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5)	1997. 08. 20.
	조선대백과사전(15)	2000. 07. 20.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5)	2010. 06. 24.

7) 극동문제연구소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된 1961년부터 2013년까지의 『로동신문』 보도 가운데 제목에 ‘시장’, ‘상품유통’, ‘상품공급’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총 29건의 기사를 전수 조회한 결과이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북한자료 DB상에 수록된 북한 정기간행물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검색한 논문조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과서류]

발행인(출판사)	책 제목	발행일자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1960년 07월 30일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1960년 04월 30일
최중극(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	1978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1999년 10월 09일

2. 시장의 개념

북한의 사전류 문헌을 조사 대상으로 ‘시장’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문헌들은 모두 국영기업소 또는 기관이 발간한 것으로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문헌에 나타난 ‘시장’, ‘농민시장’, ‘농촌시장’, ‘상품류통’에 관한 서술을 각각 조사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하여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기본 입장과 서술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핀다.

조사 대상 문헌들은 시장을 상품이 교환되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봉건사회에서 수공업에 의한 상품생산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후진적 형태의 상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발전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한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으므로 시장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주의 국내 시장은 자본가가 없는 시장으로 설명되고 있다.⁸⁾

시장에 관한 서술에서와 같이 농민시장에 관한 서술도 전체 조사 대상 문헌에서 모두 정형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민시장에 관한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시장이 협동적 소유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적 잔재를 갖고 있는 후진적인 상업의 형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농민시장의 특징을 설명한 후 농민시장 이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특징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점, 상업기관에 의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8)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3)』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p.905;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207;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259-261;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학 소사전』 (조선 로동당 출판, 1960), p.19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120.

직접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농민시장이 과도기의 국영상업을 보충하여 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농민시장의 이용 원칙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개인 텃밭의 규모를 규정하고, 국가의 지도와 조절작용을 통해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농민시장은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면 없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⁹⁾ 요컨대, 농민시장은 국가의 상품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필요하지만,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소멸되는 것으로서 과도기에 상품공급 기능을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개인부업경리’의 확대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개인 텃밭의 규모 제한을 비롯한 국가 통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1970년에 발행된 경제사전에는 다른 사전류에서와 달리 농민시장 이외에도 ‘농촌시장’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어 있지만, 농촌시장과 농민시장에 대한 설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농촌시장은 농민시장의 과거 명칭으로 파악된다.¹⁰⁾

조사 대상 문헌들은 상품유통을 상품매매 행위의 총체로 설명하거나, 직접적인 상품교환과는 달리 화폐를 매개로 하여 연속적 과정으로 형성되는 상품교환의 발전된 형태로 설명한다. 다만, 자본주의적 상품유통의 속성에 따라 상품유통에서 부등가 교환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富)가 편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상품유통은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¹²⁾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1960년 이후에 발간된 조사 대상 문헌에 공통된 내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9)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98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7), p.311;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405-40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367; 다만, 1960년에 발행된 『경제학 소사전』에는 농민시장, 농촌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10) 농촌시장은 1950년대 내각결정 제9호에 의하여 이전의 ‘인민시장’을 개편하는 방법으로 조직되었으며 농업협동화가 완성되면서 농민시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1)』, p.448.

11) 자본과 노동이 생산영역에서 유통영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유통비가 증가하게 된다. 유통비 증가는 소비자의 부담 증가, 생산력 발전 저해, 근로자에 대한 착취와 근로자의 빈궁화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12)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학 소사전』, p.178;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2)』, p.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사전(2)』, pp.154-261.

3. 사회주의 상업

1) 특징과 기능

사회주의 상업은 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 그리고, 소비를 연결시키는 필수적 중간 고리이며,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 간, 도시와 농촌 간, 인민 경제 각 부문 간, 나라의 각 지역 간의 경제적 연계를 실현한다.¹³⁾ 자본가를 배제한 국영 기업소, 협동조합 등 사회주의 생산자들이 사회주의 상업을 담당하며,¹⁴⁾ 사회주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⁵⁾ 사회주의 상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국가에 의한 상품유통 계획을 들 수 있다. 상품유통 계획에 따라 생산품의 구성,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 측정, 상업망의 배치와 상품유통량 등을 조절하게 된다.¹⁶⁾ 하지만, 이 같은 사회주의 상업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과도기적인 것으로서 사회주의 완성 단계에서는 일반 상업도 폐지되고, 생산물은 공급체에 의해 분배된다고 한다.¹⁷⁾

사회주의 상업의 기능에는 생산 증진, 인민 생활 향상, 지역간 경제적 연계, 노동에 의한 분배를 최종적으로 실현, 국가예산 수입과 화폐유통의 공고화 보장이 있다.¹⁸⁾ 이러한 기능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인민 생활 향상 특히, 주민들에 대한 ‘인민소비품’ 공급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인민소비품의 계획적 공급 기능은 후술하는 ‘조직시장’에 기초한 것이며, 농민시장과 같은 ‘비조직시장’은 ‘조직시장’을 보충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 체제는 소련의 상업체제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문헌의 사회주의 상업에 관한 내용은 소련 교과서를 번역한 1960년 『정치 경제학 교과서』 상의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모든 북한 문헌의 서술 지침이 되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도 상기한 교과서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13)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617-618.

14)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437.

15)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37.

16)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39.

17)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39.

18)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p.359-362; 한편, 최중극(1978)과 1960년에 발간된 정치 경제학 교과서와 1999년에 발간된 주체정치경제학독본에서 사회주의 상업기능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최중극,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p.61, p.160;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p.620;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359.

19)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358;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41.

한편, 1999년에 발간된 『주체정치경제학독본』의 경우 북한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서술도 확인된다. 동 문헌에 따르면, 사회주의 상업을 설명하면서 공급 사업을 “돈만 내면 요구하는 상품을 누구에게나 팔아주는” 상업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시장화 현상을 반영한 서술로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는 소비품이 상품으로 되는 것만큼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은 상업적방법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존 문헌의 서술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²⁰⁾

2) 상업의 유형

사회주의 상업의 유형에는 국영 기업소 간, 국영 기업소와 농업협동조합 간, 국영 기업소와 주민 간, 농업협동조합과 주민 간의 상품유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²¹⁾ 북한의 경우 인민소비품 상업의 형태를 크게 ‘조직시장’과 ‘비조직시장’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국영상업, 농업협동조합과 생산협동조합을 포함하는 협동단체상업²²⁾을, 후자의 경우 농민시장 상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²³⁾ 그러나 1999년에 발간된 『주체정치경제학독본』에는 사회주의 상업은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국영상업과 협동단체 상업으로만 구분함으로써 비조직시장인 농민시장 상업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상업을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소비품 상업, 사회급양, 수매로 구분하는 설명을 추가하고, 소비품 상업을 다시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⁴⁾

(1) 조직시장

국영상업은 상업유통의 사회주의적 사회화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²⁵⁾ 국영상업은 국영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유통망의 하나로서 주민에 대한 상품공급 기능을 담당한다. 협동단체 상업 중에는 농업협동조합의 비중이 크다. 농업협동조합 상점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공업제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농부산물

20)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359.

21)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37;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p.619.

22) “협동단체 상업 형태에는 농업 협동조합 직매점, 생산 협동조합 직매점, 수산 협동조합 직매점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 상업 형태에 속하지는 않지만 직매점으로서 기계 공업성, 경공업성, 농업성, 동력 화학 공업성 직매점이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49.

23)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p.621.

24)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p.362-364.

25)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p.621.

의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²⁶⁾ 한편,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유통망에는 식당과 같이 자기 생산품을 직접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사회급양 기업소를 포함하고 있다.²⁷⁾ 1999년 교과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동 교과서에 따르면, 국영상점에 대하여 국가계획에 따라 확정된 고정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전체 도매 상품과 대부분의 소매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소비품 공급의 기본 통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협동단체 상업에 대해서도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낮은 형태로 설명하는 한편,²⁸⁾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소유를 국가적 소유로 전환하는 ‘수매’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²⁹⁾

(2) 비조직시장(농민시장)

농민시장에서 상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비상설·정기적 개설 형태로 진행된다. 농민시장은 협동적 소유와 개인부업경리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즉, 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의 소유자로서 국가 수매 체계에 따라 농산물을 국가에 판매하거나, 그 일부를 농민시장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민시장은 한계를 갖는 동시에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판매 농산물에 대한 유통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품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농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농산물이 거래되므로 비사회주의적인 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가 소유와 개인적 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변환될 경우 개인부업경리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농민시장이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은 여전히 국가 및 협동단체 상업의 영향 아래 있다고 설명하거나,³⁰⁾ 농민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농민시장의 급진적 폐지를 강력히 부인하는 내용도 확인된다.³¹⁾

26)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448;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p.621.

27) 사회급양기업소는 사회적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교과서』, p.622;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p.449-450;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364.

28)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363.

29)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p.365-267.

30) 국가 및 협동단체 상업에서 상품유통이 증가하고 소매가격이 하락하면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가격도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pp.450-451.

이러한 농민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1999년 교과서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동 교과서는 농민시장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과도기인 현실에서 농민시장의 올바른 이용에 관하여 이전 시기의 교과서에 비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첫째 농민들의 부업경리를 허용하여 농민시장의 상품 원천을 마련하고, 농민시장에서 여유 농산물 처리를 허용, 둘째 여유 농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한 유통경로 개설과 농민시장 거래의 문화위생성 보장, 셋째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 제한과 ‘자본주의적 요소’의 근절 대책 마련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 부업경리 규모의 무원칙적인 확대를 경계하면서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 작용 강화 예컨대, 농산물 수매 사업의 강화, 국영상업망의 확대, 가격의 체계적 인하, 상품의 질적 제고와 대량 공급을 주문함으로써 사회주의 상업의 기본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³²⁾

2010년 발간된 광명백과사전³³⁾에는 1999년 교과서와 내용이 유사하나, 농민시장 등을 포함한 시장에 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1999년 교과서가 상업의 유형에서 비조직시장인 농민시장 상업을 제외하였지만, 시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그 이전과 달리 1999년과 2010년에 발간된 공식문헌에서 시장에 관한 기술 차이는 당시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정책과 법제의 의미

정책은 외교 정책, 금융 정책, 경제 정책과 같이 일정 분야 및 과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공식성을 갖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³⁴⁾ 한편,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며, 이러한 제도가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즉, 제도와 법 간에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제도를 창설, 즉 법제도화를 통하여 제도의 연속성과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31)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 25-30.

32)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정치경제학독본』, pp.373-375.

33) 기존의 사전류 문헌과 달리 교과서류 문헌과 같은 기술방식으로 편제되어 있다.

34) 강동욱,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2호(서울: 한국법정책학회, 2014), p.8.

북한 문헌들도 이와 같은 법제도의 정책적 의의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제도의 정책적 의의에 관한 북한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제도의 반영이며, 제도화의 기본수단이다. 법을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자 정치의 표현형식으로 설명하거나,³⁵⁾ 국가 관리의 ‘기본무기’이자 제도화의 기본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다.³⁶⁾ 즉, 제도화에서 법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둘째, 정치가 법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의 기본에 대해 정책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배계급의 정치를 통해서 법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회경제생활의 요구가 정치에 집중되고 종합되어 법에 반영되고, 이러한 법이 정치실현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⁷⁾

셋째,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 정책의 표현 형식으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이나 사회주의 도덕과 달리 법이 당 정책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행동규범의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⁸⁾ 이러한 법은 다른 사회적 수단이 가질 수 없는 구체성과 명확성, 포괄성을 갖고 당의 정책과 국가적 시책을 가장 잘 표현하며,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한다.³⁹⁾ 지배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당의 노선과 정책이 법제화를 통하여 그 요구를 실현하게 된다.⁴⁰⁾

그 밖에, 당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도 법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 문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경제사업 전반에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각종 법령의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동 문헌은 2007년에 발표된 것으로 2007년 당시 북한 당국이 실시하였던 시장 억제정책을 법적통제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5)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221; 리경철, 앞의 글, p.61.

36) 진유현, “사회주의법건설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제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35.

37)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217-219.

38) 강천복, “사회주의법은 선군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며 위력한 실현수단,” 『정치법률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31.

39) 심형일, 앞의 책(1987), pp.213-216 참조.

40) 심형일, 앞의 책(1987), p.218; 서창섭, 앞의 책, p.121; 김은경,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어길수 없는 공민적의무,” 『정치법률연구』, 제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31.

“검찰, 재판기관이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먼저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의 경제정책지배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검찰, 재판기관이 행정경제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들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리며 책임있는 일군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추궁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의 경제정책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내각의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경제사령부로 되고 있다. 그것은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들이 내각의 결정과 지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통하여 집행되기 때문이다. 검찰, 재판기관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며 내각의 지휘에 복종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장하여야 한다.”⁴¹⁾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 당국은 법제를 제도화의 기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도의 강한 정치성, 당 정책의 수단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과 법제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북한 법제는 정치, 당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와 당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

제1절 서설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에 따라 다른 시기에 비하여 경제 사정이 양호하였다. 이는 이전의 북한 내 상업체계를 사회주의체제에 맞춰 빠른 속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⁴²⁾ 1960년대 쿠바사태와 중-소 관계 악화

41) 장성철,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검찰, 재판기관의 중요과업,”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p.29.

등에 따른 원조 감소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론’을 통한 경제 자립을 강조하면서 대외무역과 서방세계를 통한 자금조달에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황기에 그동안 서방세계로부터 차관 등의 형태로 조달하였던 자금의 상황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의 외채문제가 불거졌으며, 결국 1987년 서방세계 채권은행단에 의하여 외채상환 불능 상태임이 공식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⁴³⁾ 그 이후 북한의 경제난은 다음의 <표 3-1>과 같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극심한 경제난과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러한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3-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성장률	연도	성장률	연도	성장률
1965	8.5	1995	-4.1	2005	3.8
1970	10.2	1996	-3.6	2006	-1.0
1975	5.4	1997	-6.3	2007	-1.2
1980	3.8	1998	-0.9	2008	3.1
1985	2.7	1999	6.1	2009	-0.9
1990	-3.7	2000	0.4	2010	-0.5
1991	-3.5	2001	3.8	2011	0.8
1992	-6.0	2002	1.2	2012	1.3
1993	-4.2	2003	1.8	2013	1.1
1994	-2.1	2004	2.1	-	-

출처: 한국은행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해방 이후 북한 당국이 확립하였던 사회주의 상업체제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국영상점과 사회급양망의 상품 공급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된 형태로 설명되는 배달, 야간 또는 이동 판매와 주문 판매는 실현시키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의한 상품공급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

42)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35-36.

4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5), p.180;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2006), p.44; 통계청,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4), p.95.

이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회귀할 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상품을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 경리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라는 김일성 교시⁴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거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과도기를 거쳐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했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식량공급과 같은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정책에서 ‘자기부정’은 그동안의 원칙적 시장 불허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1990년대 중반 대기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즉, 국제적 고립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체제유지라는 명제를 상수화 하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여 정책적 모호성을 견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암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행위를 양성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확립 이후시기에 북한 당국이 보여 왔던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국내문헌들이 비공식적 거래행위의 ‘묵인’, ‘허용’, ‘억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위와 같은 정책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시장은 북한 당국이 직면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를 거듭하였다.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거래행위를 묵인하거나, 시장 정책이나 법제를 통하여 통제권 내로 수용하여 통제된 시장 거래를 허용하였다. 때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하여 시장 거래를 억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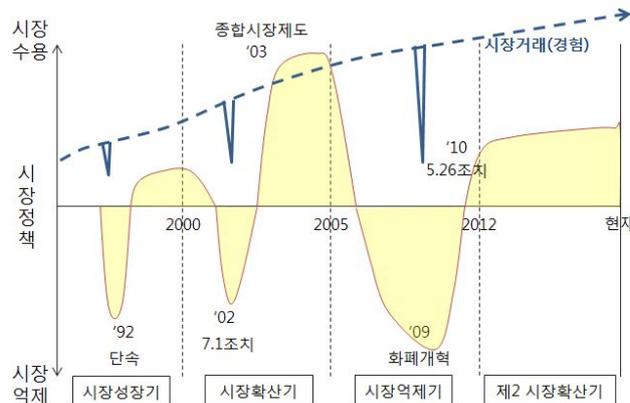
북한의 시장화 논의에서 시기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각이하나, 대체로 다음의 구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하여 통제와 묵인을 반복하였던 1990년대, 둘째 7.1 조치 발표 이후 종합시장을 허용하였던 2000년 중반 이전, 셋째 화폐개혁을 포함한 시장 통제 정책을 비교적 활발히 진행했던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⁴⁵⁾ 정형곤외(2012)는 보다 세부적인 시기구분을 통하여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스킨너(Skinner, G. William)의 분류 방법에 따라 크게 세 시기(① Radical Phase, ② Crisis Phase, ③

44)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pp.25-26.

45)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15(1)(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p.86; 권요윤·정성훈,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회과학연구』, 28(1)(부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p.164.

Liberal Phase)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시기별 특징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서 제1단계(1945-1958년)를 인민시장 및 국유화 이전의 시장, 제2단계(1958-1980년)를 국유화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의 시장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 시기에서 제3단계 (1980년대 중반-1993년)를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성장기, 제4단계(1994-2001년)를 농민시장의 변질과 시장의 확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서 제5단계(2002-2005년)를 제도적 시장 건설기, 제6단계(2006-2012년)를 시장 억제기로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시장경험 축적의 정도와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존 사회주의 상업 체제 하의 정책과 법제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암시장이 성장하였던 ‘시장 성장기(1970년-1990년대)’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 주민의 시장경험이 빠르게 증가되고, 종합시장⁴⁶⁾제도가 시행되었던 ‘시장 확산기(2000년-2004년)’를 구분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시장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포함한 반(反)시장화 정책을 실시하였던 ‘시장 억제기(2005년-2011년)’을 구분하며, 김정은의 정권세습 이후 소위 ‘6.28 조치’나 ‘5.30 조치’ 등 경제부문을 강조하면서 화폐개혁 이전 시기의 시장정책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제2시장 확산기(2012년-현재)’까지를 구분한다. 이를 도해화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시장정책의 전개에 따른 시기 구분

46) 양문수(2013)은 “북한은 2003년부터 암시장으로 바뀐 농민시장을 합법화했는데 이를 주로 한국에서 종합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 문헌들은 이를 지역시장이라 칭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42.

하지만, 사회주의 상업체계가 확립된 시기 이후에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 그리고 시장기능의 변화를 1차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확립 과정에 대해서는 조선중앙연감에 비교적 상세히 다뤄지고 있었지만, 1968년판 연감부터 이전의 내용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찬양적 서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상업 부문에 관한 서술도 통계자료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내각결정 등과 같은 제도 변화에 관한 자료소개가 사라지고, 단순히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정치적 선전에 치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1969년판 조선중앙연감부터는 과거 김일성 교시의 주요 문장과 한 해 동안 해당 교시에 따른 동향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⁴⁷⁾ 그 밖의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⁴⁸⁾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조사하였던 자료를 확인하거나, 2차 자료인 국내문헌을 살펴본다. 아울러, 통일연구원이 2007년부터 정리하여 제공하는 『월간북한동향』에 수록된 자료들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국내외 언론 등 각종 매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관련 내용도 확인하고자 한다. 그 밖에 「월간북한동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가운데, 『좋은벗들』과 같은 대북소식지의 내용도 활용한다.

제2절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전개

1. 시장 성장기(1970년-1990년대)

1) 시장정책의 전개

1967년 이후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농민시장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문헌에서도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시장은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 상업체계 하에서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하지만, 농민시장은 필요최소한성에 입각한

47) 양문수(2015)는 1966년 10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경제계획 기간을 3년 연장기로 결정했지만, 당초 계획목표는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계획을 종료한 사실에서 북한 정부가 그동안 어느 정도 발표해왔던 경제통계의 발표를 갑자기 중단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라는 사실로부터도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pp.36-3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1969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9), p.256.

48) 극동문제연구소 디지털아카이브에 수록된 1961년부터 2013년까지의 『로동신문』 보도 가운데 제목에 ‘시장’, ‘상품류통’, ‘상품공급’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총 29건의 기사를 전수 조회한 결과이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북한자료 DB상에 수록된 북한 정기간행물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검색한 논문조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통제 가능한 합법적인 영역에 남게 되었다. 1967년 직후에 발간된 김일성의 1969년 저서인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농민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잔재가 많습니다...국영상업이 발전되고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작용이 강화되는데 따라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이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단계에서는 농민시장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습니다...사회주의하에서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부업생산이 있는이상 농민시장이 없을수 없으며 또 그것이 남아있는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것은 나쁠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특히 비자루나 바가지와 같은 소소한 일용품들과 고기와 닭알 그리고 참깨, 들깨 같은 부식물들을 다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경리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 방법이 뒤떨어진것이기는 하지만 선진적방법으로 다 할수 없을 때에는 뒤떨어진 방법도 리용하여야 하는것입니다...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공동경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리기주의를 길러준다고 하면서 **법령으로 농민시장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장마당은 없어지지만 암거래는 의연히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은 비록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값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암거래되거나 농민시장에서 되거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⁴⁹⁾

김일성의 위와 같은 교시는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선택에서 지도적 지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1969년 김일성은 「전국 상업일군 열성자회의」에서 1일장을 폐지하기 위하여 10일 간격으로 개장하는 농민시장을 1군에 1개소씩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주요 도시 중심지역에 있던 시장을 폐쇄되거나 변두리지역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보인다.⁵⁰⁾

한편, 위에 소개한 문헌의 내용에서 법령으로 농민시장을 없애도 “암거래는 의연

49)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pp.25-30.

50) 정정길·전창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분석,” 『농촌경제』, 제23권 제2호(서울: 농촌경제연구원, 2000), p.105.

히 남아있게 될것입니다.”라는 언급은 그 당시 농민시장 또는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암거래가 사회주의 상업체제 하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의 암거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는 단계에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필품 생산이 도외시됨에 따라 진행되기 시작하였다.⁵¹⁾ 그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경제의 침체⁵²⁾로 인해 상품의 암거래가 확대되기 시작한데 이어, 1980년대 상품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국영상업유통의 기능저하에 따라 농민시장에서 암거래가 활성화되었다.⁵³⁾

암거래가 활성화된 배경으로 수령의 우상화와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계획 경제부문 침식, 외화벌이사업과 북한 귀국자에 대한 해외친척의 원조에 따른 해외 자금과 상품의 유입,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의 영향에 따른 속도전과 8.3인민소비재운동 추진에 따른 상품공급의 일시적 증가를 들 수 있다.⁵⁴⁾ 즉, 계획경제부문의 침식이 농민시장을 통한 상품유통 기능의 확대에 이어졌으며, 이는 당시 속도전, 외화벌이사업과 해외친척의 원조, 8.3인민소비재운동에 따른 상품 증가가 농민시장의 암거래로 확산되었던 흐름을 추론케 한다.⁵⁵⁾

농민시장의 최소한의 기능만을 인정하려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시장에서 암거래의 확산은 용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북한 당국은 1992년부터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결성하여 농민시장에서 발생하는 암거래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지만,⁵⁶⁾ 주민들의 반발,⁵⁷⁾ 1990년대 중반의

51) 1955년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으로 인한 인력과 물자 유입은 가가호호 방문에 의한 제한적인 암거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6년 북한 당국이 군수산업을 위한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경공업산업이 후순위로 밀리자 북한 주민에 대한 상품공급 부족이 심화, 국영상업망의 축소는 암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정형근·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p.51-52.

52) 정은이(2011)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침체기에 빠진다는 일반적 주장과는 달리,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이 같은 배경에 1966년 이후 가시화된 군비강화, 중소갈등, 1967년 이후 유일사상체제의 확립과 동시에 실시된 기념비적인 사업의 추진을 들고 있다.;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pp.237- 238.

53) 정경길·전창근, 앞의 글, p.105; 정형근·김병연·이석, 앞의 책, p.54.

54) 당시 북한 경제에 특징적인 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정은이(2011)과 정형근 외(2012) 참조;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pp.224-262; 정형근·김병연·이석, 앞의 책, pp.56-57.

55) 정형근 외(2012)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1980년대부터 메뚜기장 혹은 유통장이 생겨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그 특성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농민시장과 같이 공식화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상인들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 여기저기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메뚜기 시장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북한의 계획경제가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시장으로, 북한 암시장 확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형근·김병연·이석, 앞의 책, pp.57-58.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상품공급 마비, 식량배급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을 통한 암거래를 선택하면서 농민시장은 북한 주민이 대거 참여하는 암시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암거래에 대한 통제와 목인을 반복하던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생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김일성의 교시에 비춰보아도 농민시장을 없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무렵 공식적인 시장 통제 정책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의 암시장화를 목인 내지 방기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⁵⁸⁾ 이러한 농민시장의 암시장화는 시장에서 돈을 번 상인인 ‘돈주⁵⁹⁾’라는 새로운 계층을 양산하였으며,⁶⁰⁾ 이들은 권력층과 연계하면서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암시장을 공고화하고 농민시장 이외의 시장⁶¹⁾이 확산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확산은 주로 공급 물자가 풍부한 중국 국경 주변 혹은 항구 주변을 중심으로 생겨났지만, 이 역시 국영 상업망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목인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²⁾

1990년까지 농민시장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시장정책은 확인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경제의 침체

56) 당시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서재진(1994) 참조;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94-23(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36-38.

57)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58.

58) 양문수, “통계를 통한 북한경제의 이해와 북한의 시장경제,” 『북한통계 설명자료』(대전: 통계청, 2014.10), p.2.

59) “장사가 성행하기 이전부터 장사를 시작해 돈을 번 뒤 현재 돈주가 된 사람들이 많다. 돈주들 중에는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공채를 사거나 현금을 하기도 한다. 국가로부터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주들 사이에 기부금 경쟁이 불기도 한다. 북한 당국에서는 돈주들과 상인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다가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을 한다.”; 『좋은벗들』, “2004년 북한의 돈주,” 3호, 2006.9.21.

60)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9), pp.172-173.

61) 관련 국내문헌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암시장화 된 농민시장을 ‘장마당’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북한의 공식문헌인 사전류 자료에는 ‘장마당’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다. 『조선대백과사전(16)』(2000)에 따르면, ‘장’은 “봉건시기 일정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생산물이 교환되던 상업형태, 장시, 향시”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이므로, 소위 ‘장마당’은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속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6)』(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417.

62)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p.59-60.

와 이에 따른 상품공급 부족현상으로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암거래가 활성화되었지만, 이에 따른 북한 당국의 확인된 조치는 1992년 비사회주의 그루빠 결성을 통한 단속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농민시장이 암시장화 되고, ‘돈주’라는 새로운 계층이 양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의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강력한 통제 정책을 전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돈주’들이 권력층과 연계하면서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암시장이 공고화되는 상황 까지도 묵인하였던 것은 체제유지가 당면과제였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수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⁶³⁾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듯 농민시장 개설 빈도의 변화는 아래의 <표 3-2>와 같다. 이러한 조치가 북한 당국의 적극적 정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장화 현상을 묵인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1992년 단속 조치가 있었던 시기 이후에 농민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시기별 농민시장의 개설 빈도 변화

시 기	개설빈도
1969-1982	10일장(농촌지역)
1982-1987	상설시장화(1982년) ⁶⁴⁾
1987-1990년대 초	주일장으로 전환 후 다시 10일장으로 환원
1993-1990년대 말	매일장(상설장)으로 재전환(1993년)

출처: 정정길·전창곤(2000)

2) 상업법제의 변화

이 시기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을 담고 있는 규정화된 형태의 자료는 1992년 단속 조치가 있었던 시기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이

63) 정은이(2009)는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사회가 패닉상태에 빠져 국가양정(糧政)체계 까지 마비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사태의 수습을 위한 어떤 규제도,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p.163.

64) 정형곤 외(2012)는 1982년 농민시장 상설화를 언급하고 있는 논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조치나 법규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당국이 당시 성행하던 농민시장을 공식 분야의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해 농민시장의 상설화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재진(1994)는 10일장이 매일장으로 바뀐 시기가 1989년 무렵이라는 귀순자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55; 서재진, 앞의 책, p.26.

하 ‘상업법’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한 법으로 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영상점 등과 같은 사회주의 상업체계를 종래 내각명령 등과 같은 행정명령 수준에서 규정하여 관리한데 그친 것이라면, 이제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을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92년 제정 상업법과 또 이 시기 말에 있었던 1999년 개정 상업법⁶⁵⁾의 내용은 당시 암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농민시장의 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⁶⁾

동법은 총칙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상업의 기본’을 두고, 각칙으로 ‘상품공급’, ‘수매’, ‘사회급양’, ‘편의봉사’, ‘상품보관관리’,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서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1999년 개정 상업법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총칙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관한 북한 당국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상품공급의 확보와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 체계의 정립, 상품유통사업의 강화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종래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이후 상품공급의 부진, 미흡한 통제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칙부분의 내용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⁶⁷⁾ 1999년 개정 상업법의 내용도 일부 단어와 문구의 조정, 그리고 조문의 통합 등을 제외하고 이 연구와 관련한 특기할 만한 수정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지막 장에 규정된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내용이다. 제86조에서 “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업부문의 질서와 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라고 강조하면서 중앙 상업지도 기관이 전국의 상품유통을 장악·지도

65) 1992년 제정된 상업법과 문구 수정, 조문 수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나, 「제9장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규정된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내용과 유사하다.

66) 1992년 제정된 상업법과 1999년 개정된 상업의 내용은 각각 사회과학출판사와 국가정보원 발간 자료를 참조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1993;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2003.

67) 이러한 사실은 『조선중앙년감』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1971년판은 상품공급에 관한 서술 방식을 이전과 달리 ‘상업망의 확장’, ‘주문제 확립’, ‘편의봉사’, ‘상업일군양성’을 구분하였으며, 1973년판에서는 ‘편의봉사’를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중앙년감』의 내용은 1986년판부터 상품공급에 관한 서술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고, 지방정권기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상품유통을 지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농민시장이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 형태라는 점과 관련 기관에 의한 지도와 검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상업검열에 관하여 두 개의 조문을 할애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바꿈질’, ‘직매처리’하는 경우 계획수행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업법 상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법의 제정이 1992년 단속 조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주민의 반발과 ‘고난의 행군’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문제, 김일성 사후 사회혼란 등이 맞물리면서 단속 조치도 중단되었으며, 상업법의 조문들도 시장화 확산과 함께 사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개정 상업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저, 종래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감독통제’사업을 중앙상업지도기관이 담당하였지만, 개정 상업법에서 국가가 직접 ‘감독통제’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검열감독기관의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였다. 또한, 검열감독기관의 국정상품가격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통제 규정을 삭제하였다.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검열’이라는 문구를 개정 상업법에서 일체히 삭제하고, 농민시장에 대한 검열통제사업, 그리고 국정상품가격 준수 여부의 검열 감독 규정을 삭제한 것은 농민시장의 암시장화에 이은 공고화의 과정을 묵인하였다는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개정 상업법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상점이나 식당, 편의봉사기업소를 내올 수 없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상인에 의한 상점, 식당의 확산이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어적인 조치로 보인다. 상업법의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

<표 3-4> 상업법 전후 대비(1992년 제정 및 1999년 개정법)

제정 상업법(1992년)		개정 상업법(1999년)	
§86	<p>사회주의상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업경영활동을 개선강화하며 상업부문의 질서와 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p> <p>국가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을 통하여 사회주의상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고 상업정책집행을 지도하며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한다.</p>	§80	<p>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p> <p>국가는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p>
§87	<p>중앙상업지도기관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나라의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을 장악지도하여야 하며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안의 모든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p>	§81	<p>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상점이나 식당, 편의봉사기업소를 내을 수 없다.</p>
§92	<p>국가가가격제정기관은 상품, 음식물, 수매품의 값과 편의봉사료금 같은 것을 정확히 정하여야 하며 국가 검열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가 정한 상품값과 료금 규률을 지키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p>		<삭 제>
§93	<p>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형태인 농민시장을 옹계 관리운영하도록 지도하며 국가검열감독기관은 그 관리운영에 대한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p>	§86	<p>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형태인 농민시장을 옹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p>
§94	<p>정무원은 상업검열사업체계를 세우고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검열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국가의 상업정책 집행정형과 상업경영활동정형,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상품생산공급정형을 검열하고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p>	§87	<p>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p>

제정 상업법(1992년)		개정 상업법(1999년)	
§95	국가검열감독기관은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업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u>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u>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바꿈질, 직매처리하였을 때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여주지 말며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88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바꿈질, 직매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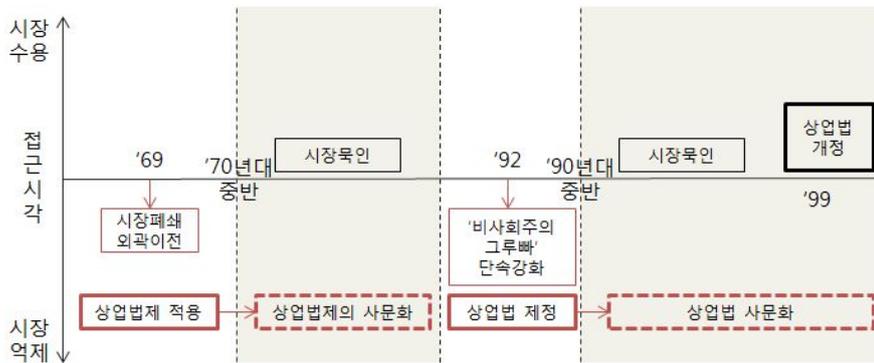
3) 평가

이 시기에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상업체계를 확립한 이후에 지속되어 오던 농민시장 또는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암거래가 1970년대 중반이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암거래 문제의 확산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1992년부터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결성하여 단속하는 등의 시장 통제 정책을 선택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주민의 반발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과 대기근 현상으로 이러한 정책은 지속될 수 없었다. 결국, 다수의 북한 주민이 생존을 위해 암거래에 나서면서 농민시장이 대규모 암시장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본을 축적한 ‘돈주’가 새롭게 등장하고, 이들과 권력층이 연계되는 등 암거래가 공고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영 상업망에 의한 공급 부족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당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결성하여 단속하는 등의 강경한 정책은 같은 시기에 북한 당국은 상업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그 내용도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관한 북한 당국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종래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상품공급의 확보와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 체계의 정립, 상품유통사업의 강화를 별도로 명시하는 등 암거래 확산으로 훼손되고 있는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상업법 제정이 1992년 단속조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단속 조치가 주민의 반발, ‘고난의 행군’, 김일성 사망 등 정치, 사회적 문제와 얽히면서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묵인’을 선택하였고, 결국 상업법도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업법은 1999년 개정을 통하여 ‘검열’이라는 문구를 일체히 삭제하고, 농민시장에 대한 검열통제사업, 그리고 국정상품가격 준수 여부의 검열감독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농민시장의 암시장

화에 이은 공고화 과정을 북한 당국이 묵인하였다는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상업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일부 규정에서 북한 당국의 승인에 의한 상점 등의 개설을 신설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2>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1970년-1990년대)

2. 시장 확산기 (2000년-2004년)

1) 시장정책의 전개

이전 시기에 농민시장이 암시장화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되었다. 그 공간도 장소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품유통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농민시장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는 철저히 통제할 대상이며, 암거래와 같은 불법적 거래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극심했던 경제난을 겪었던 시기가 경과하고,⁶⁸⁾ 김정일 체제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암시장은 적극적인 통제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두 가지의 정책적 선택지를 갖게 된 셈이다.⁶⁹⁾ 첫째는 시장 억제적

68) 앞서 <표 3-1>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 계수는 1999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양(+)으로 전환한 후 2006년 이전까지 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극심한 경제난의 시기가 종료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69) 박형중 외(2009)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에 대한 담론 구조는 개혁적 국면과 보수적 국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여준다면 정책이 보수성을 띠 경우 대안의 사업체제 관철, 정치 도덕적 자극 강조, 중앙집권적 원칙 고수, 인민경제 계획화 원칙 강조로 이어지며, 정책이 온건하고 현실적인 경우 기업관리에 독립채산제 원칙 적용, 물질적 자극 강조, 기업 경영의 상대적 독자성, 상품화폐 범주 이용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2000-2004년과 2005년 이후의 정책담론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면서

접근으로 암거래를 국영상점 등 사회주의 상업체계 내로 흡수하여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시장 수용적 접근으로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양성화시켜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전자는 북한 당국의 기존 입장에 철저한 조치로서 농민시장의 필요최소한성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의한 공급확대에 따라 암거래를 소멸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2001년 10월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 이어 2002년 7.1 조치를 실시하였다. 당초 북한 당국의 7.1조치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정책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북한 당국이 각급 기관장에게 강연 자료로 배포하였던 문건으로 추정되는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⁷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 문건은 당시 농민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가격사업을 옳게 실행하지 않아, 나라의 경제사업에 전반적으로 중대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국정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도 낮아서 장사행위가 성행하고,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한데 민간 상품에 둘러싸여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농민시장에 가보면 쌀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에서부터 공업제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이 모두 있다. 그 대부분은 낮게 책정된 국정가격과의 격차를 이용해 국가물자를 모두 빼들려서,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은 국가가 하고 있는데, 상품과 돈의 대부분은 개인의 손에 들어 간다.”

위와 같은 북한 당국의 인식은 암거래를 국영상점 등 사회주의 상업체계 내로 흡수하여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근절시키자는 반(反)시장적 접근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붕괴되거나, 부족했던 국영 상업망으로는 적정한 상품공급이 어려웠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통하여 삶을 보장받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⁷¹⁾ 북한 당국은 2002년 9월과 2003년 3월에 농민시장에서 쌀과 공산품

2001년과 2009년 김정일의 경제 담화에 나온 핵심단어를 비교하고, 2006년 이후 경제연구의 논문 주제어를 소개하고 있다.;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112-123.

70) RENK(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에 입수되어 2002년 12월 19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 소개된 자료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번역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판매를 각각 허용한 후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였다.⁷²⁾ 7.1조치 직후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이 시장 억제적 조치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양성화시킨 후 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당초 계획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7.1조치 직전인 2002년 5월 22일 개정된 상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02년 개정 상업법은 1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1999년 개정 상업법과 동일하였다.⁷³⁾ 1999년 개정 상업법 제9조가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 간 교류를 잘하며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소매상업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개정으로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다. 국영 유통망에 해당하는 소매상업 기관 등의 공급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고,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농민시장이 대체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국영상점 등 사회주의 상업체계 내로 흡수하여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근절시키자는 반(反)시장적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당시 시장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2003년 5월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은 2002년 7.1조치에 이은 일련의 계획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시장을 전격적으로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는데 7.1조치 후 10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은 북한 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 후속조치로 진행하기 위한 완충기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결과는 기존 암시장의 합법화 및 묵인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⁴⁾

71)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63.

72) 정형곤 외(2012)는 북한 당국은 기존 장마당을 증개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장 확대 노력도 확인되며, 그 결과 2003.12월 평양시내에만 38개 종합시장이 생기게 되었고, 기존의 농민시장이 전국적으로 30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64.

73) 2002년 개정 상업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북한법연구회가 발간한 2005년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2004년 개정 상업법과 국가정보원이 2003년 발간한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1999년 개정 상업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74) 양문수(2010)은 탈북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되었던 것은 기존에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던 품목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동 정책은 기존 암시장의 합법화 및 묵인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227.

2) 상업법제의 변화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은 2003년 5월 기간 중에 규정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⁷⁵⁾ 2003년 5월 5일자로 김정일의 내각지시 제24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 전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와 내각명령 제27호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같은 해 5월 20일자로 상업성 지시 제48호를 발표하였다. 이들 규정을 통하여 당시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규정들은 크게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양성화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따른 통제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양성화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현존하는 시장 이외에 신규 시장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시장의 이름을 해당 지역이나 리(里)의 지명으로 하고, 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건설, 시장관리소 조직, 시장의 독립채산제 운영,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의 부과, 시장 밖이나 집에서 공업상품을 가공하여 넘기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대상, 각종 상품을 ‘되거리’하는 사람들을 해당 지역 재정기관에 등록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판매금지 제품(통제품)을 제외하고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생산하는 상품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종래 농민시장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암거래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시장통제 기체에 의해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붕괴 내지 축소되었던 국영상점 등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통제와 사회주의 상업체계 복원에 관한 내용으로는 첫째, 상업성이 통제품을 시기별로 실정에 맞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장한도가 가격과 상품가격을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할 경우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셋째, 국영상점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회사와 연계토록 하며, 수입상품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내각지시 제24호를 기초로 내각명령 제27호로 규정화되고, 다시 상업성 지시로 각 지역에 하달된 것으로서 모두 기본 골자는 동일하다. 다만, 내각지시가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내각명령과 상업성 지시는 각각 법령

75) 내각지시 제24호와 내각명령 제27호의 내용은 일본 RENKI(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가 입수한 것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번역한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상업성 지시 제48호는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의 위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순차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도 확인된다.⁷⁶⁾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의 필요최소 한성에 입각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시장가격을 낮추는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영상점 등의 상품수급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여 무역 회사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부분도 당시 북한 경제의 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2년 5월 22일 상업법이 개정된 이후 2004년 6월 24일 다시 개정되었다. 2004년 개정 상업법은 2003년 5월 내각지시 제24호를 비롯한 일련의 규정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매 기관이 수매할 때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불문한다는 규정과 상품광고의 승인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내각지시 제24호의 내용과 내각결정 제27호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제10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국내 생산 상품과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거나 살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구매력에 기초하고 있는 ‘상품광고’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 기능에 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한다.⁷⁷⁾

이와 함께 농민시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즉, 이전 상업법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형태인 농민시장”라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형태’를 삭제하고 농민시장의 명칭도 ‘시장’으로 표기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위의 내각지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만, 농민시장과 구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시장이 갖는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성’보다 한층 진일보한 시장기능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규정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등의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추가하였다.⁷⁸⁾ 상업법의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76)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77) 양문수(2010)은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자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을 것이다.”라는 2003년 6월 16일자 『조선신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조치는 암시장의 양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pp.75-76.

78) 2004년 개정 상업법 제88조에 규정하고 있는 벌금은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적책임’의 형태의 형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행정질서벌의 형태인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형법상 벌금형은 1974년 개정형법에서 폐지된 이후 2009년 개정형법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부과하는 부가형벌로 재등장하고 있다.

<표 3-5> 상업법 전후 대비(2002년 및 2004년 개정법)

개정 상업법(2002년)		개정 상업법(2004년)	
§27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상품을 빼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판매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7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용상품을 빼내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판매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7	내각은 해당 중앙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수매품의 검사, 보관 방법 같은 것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37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중앙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37 및 §38 통합>
§38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38	상업기관, 기업소는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신설>
§42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42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46	지방정권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공장을 꾸리고 1차 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46	지방정권기관과 사회급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 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49	국가는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자재문화용품 같은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품종과 기간은 정하는 사업의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49	국가는 편의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품종과 기간은 정하는 사업의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51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51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개정 상업법(2002년)		개정 상업법(2004년)	
§63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구수, 인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고려하여 상품품종별, 봉사업종별로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며 그 형태별 배치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문, 종합봉사망과 고급 또는 일반봉사망, 협동식당, 협동편의, 가내편의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3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66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66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 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74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상업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74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 것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의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81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상점이나 식당, 편의봉사기업소를 내올 수 없다.	§81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86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형태인 농민시장을 옹호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86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88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바꿈질, 직매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그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넣는다.	§88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거래한 상품과 돈을 몰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식당, 봉사소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린다.

3)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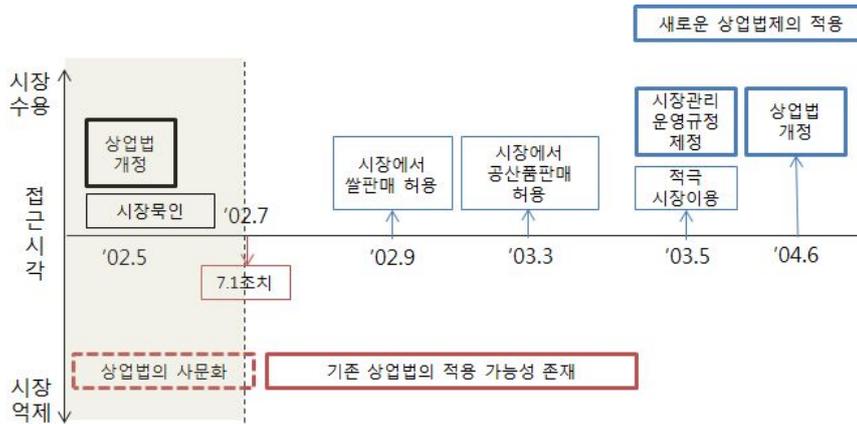
이 시기는 극심한 경제난을 지나고 김정일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그동안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붕괴현상 즉, 농민시장의 암시장화와 그에 따른 문제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의 입장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한 시기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국영상업망이 열악했던 현실을 감안한 북한 당국은 상품공급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고, 결국 2002년 7.1조치에 이어 주민들의 반발 등과 같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확인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03년 5월 종합시장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5월 내각지시 제24호, 내각명령 제27호로 제정된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상업성 지시 제48호를 통하여 종합시장제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4년 6월 개정 상업법은 이들 규정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제화 현상은 이전 시기에 1992년 ‘사회주의 그루빠’에 의한 단속 시기에 맞춰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충실한 상업법제를 제정한 것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은 암거래 확산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북한 내 상품생산과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수입상품과 개인 생산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묻지마’식 수매를 인정한 것은 밀수의 증가, ‘돈주’의 자본가화와 권력층과 결합 심화로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장과 권력층 간의 유착관계 확대에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가격한도 제한이 지켜지지 않자 오히려 시장이 이후시기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⁷⁹⁾

결국, 이 시기는 암시장화 되었던 농민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양성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일부 허용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복원을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적극적 통제를 병행했던 이 같은 조치는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북한 당국이 그동안 우려해 왔던 ‘자본주의적 요소’에 의한 폐해를 확산하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에 따른 주민의 생활고를 방조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79)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p.65-67.



<그림 3-3>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2000년-2004년)

3. 시장 억제기(2005년-2011년)

1) 시장정책의 전개

이전 시기에 북한 당국이 선택하였던 시장 수용 정책은 시장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던 자에게는 불편한 현실이기도 하였다. 2006년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도 다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⁸⁰⁾ 시장에서의 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아래의 <표 3-6>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시장에서 쌀 가격이 2003년 2월 130-150원이었던 것이 2004년 8월에는 680원으로 급상승한 것은 반(反)시장적 인식을 가졌던 자들에 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⁸¹⁾ 또한,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상품이 시장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영상점 등 국영상업망의 기능 저하로 이어졌다. 더욱이 시장을 매개로 불법적인 현상이 확산되

80) 앞서 <표 3-1>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 계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양(+)이었지만, 2006년 이후 음(-)으로 전환된 후 2008년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그 기초를 유지하고 있었다.

81) 1969년 김일성이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넉넉히 생산공급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조급하게 농민시장을 없애려는 좌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라고 급진적 사회주의 상업체계로의 이행을 경계하였지만, 2009년 『경제연구』의 논문에서 리원경은 “화폐공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그것을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우경적 견해다.”라고 7.1조치 이후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온건적 접근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리원경,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 『경제연구』 2009년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40.

었던 것⁸²⁾은 체제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시장 친화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북한의 쌀 가격 국제 비교

시기	국제 쌀 가격		북한 쌀 가격			
2002년	0.289 달러		0.29(44원/환율 150원)			
2003년	0.33 달러		-			
2004년 8월	0.35 달러		0.29 달러			
2005년 6월	0.40 달러		0.38달러			
2006년 4월	0.36 달러		0.36 달러			
2007년 10월	0.34 달러		0.39 달러			
구분	2002년 2월	2003년 2월	2004년 8월	2005년 6월	2006년 4월	2007년 10월
쌀(1kg)	48-55원	130-150원	680원	950원	900원	1,300원
환율(1달러)	220원	670원	2,300원	2,500원	2,500원	3,300원

출처: 이정철, 「북한 가격정책의 내용 분석 및 향후 변화 경로 예측」, 통일부 정책과제, 2007. p.28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은 2005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2007년부터 종합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재건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다수 확인된다.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 ‘국가식량전매제’를 시도함으로써 양정기관, 국영상업망을 통하여 식량유통을 피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식량거래를 금지하였다.⁸³⁾ 또한,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8.3 노동을 비롯한 개인 영리를 위한 노동을 금지하였다.⁸⁴⁾ 2007년 하반기에는 일정 연령 이상자에 대한 상행위를 금지⁸⁵⁾하는 등 시장에

82)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권영경(200)은 “시장공간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비임금소득 원천은 단순히 장사를 넘어 임노동, 서비스노동, 뇌물, 횡령, 도둑질, 매춘, 고리대금업, 달러장사, 숙박업, 밀주·가내수공업 등 그야말로 상품화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산일로에 와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권영경,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3권 2호(서울: 북한연구학회, 2009), p.48.

83) 박형중·조한범·장용석, 앞의 책, p.5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토출판, 2006), pp.23-30 재인용.

84)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67.

85) 이러한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좋은벗들』의 자료에 따르면, 1차로 30세 이하 여성의 장사가 금지되었으며, 곧이어 40세로 상향 조정된 직후 다시 45세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좋은벗들』, “12월 1일부터 45세 이하 여성 장사 금지,” 『오늘의 북한 소식』, 제97호, 2007.11.07.

대한 엄격한 통제는 2007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정일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투철한 신념,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녀야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좀먹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⁸⁶⁾”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던 ‘비사회주의적’ 현상 즉,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향후 강도 높은 통제와 ‘사회주의 본태’ 회복이라는 사회주의 국영사업 강화 정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전 시기에도 암시장 확산에 따른 문제들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통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 국영사업 강화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의 변화 즉, 강·온 세력의 교체에 따른 시장정책 노선의 변경을 그 계기로 지적하는 견해⁸⁷⁾는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같은 해 김정일의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으로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8월에는 시장에서 상업행위에 대한 방침(소위 ‘8.26 방침’)을 세우고, 이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0월 3일 “시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뽑자.”는 문건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시장 부지 외에서의 노점 금지, 둘째 일정 연령(평양에서는 40세) 미만 여성의 장사 금지, 셋째 의약품 등 판매 금지 대상품의 단속, 넷째, 운송업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⁸⁸⁾ 또한, 2008년 11월 상업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던 종합시장을 10일제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⁸⁹⁾ 하지만, 그 시행이 연기된 이후 2009년 6월 평성시장이 폐쇄된 사실 이외에 다른 시장의 폐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⁹⁰⁾ 2009년 1월 19일에는 앞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문건의 연장선에 있었던

86)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8.1.1.

87) 박형중,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 - 2009년의 북한을 바라보며 -,” 『Online Series CO 08-72』(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1-3.

88) RENK(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가 입수한 문건을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 보도했던 내용을 이영화가 시사IN에 게재한 글에서 재인용한 내용이다.; 시사IN, 2008년 1월 30일.

89) 박형중·조한범·장용석, 앞의 책, p.5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의 2008 북한 10대 뉴스, 『오늘의 북한 소식』, 제259호, 2008.12.30.

90) 『월스트리트저널』, “북 최대의 평성시장 폐쇄”(2009.9.19.), 『월간북한동향』 제2권 제2호

것으로 보이는 통제품 지정에 관한 상업성의 지시가 있었다. 통제품의 품목은 15가지 총 120여 종에 달하였고,⁹¹⁾ 이후에도 그 대상을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⁹²⁾

한편, 2008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시장 통제 조치와 함께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재건을 위한 비현실적인 줄속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말부터 평양시가 시범적으로 국영상점에 의한 공산품 독점판매를 실시한 이후 신의주를 비롯한 청진, 혜산, 회령, 함흥, 평성 등으로 확대 실시하였다.⁹³⁾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양곡판매소를 통한 식량 독점판매를 하겠다고 밝혔다.⁹⁴⁾ 『좋은벗들』에서 작성한 2008년부터 2009년간 시장 단속 일지를 살펴보면 이 기간 중 북한 당국의 조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2008-2009년간 시장 단속 일지

(2008년)

월	시행내용	세부내용
1	장사 연령 제한	• “40세 미만 여성, 장사하지 말라.”고 발표
3	40세 미만 여성 공장 배치	• “40세 미만 여성, 직장에 모두 입직시키라.” 발표 • 출근하지 않는 여성들은 남편 직장에까지 통보하겠다고 업포. 다만, 다산모(아이 셋 이상 낳은 여성)는 나이에 관계없이 장사 허용
4	신의주 손수레 짐 금지	• “손수레나 자전거에 짐 싣고 다니지 말라”

2008년 9,10월(서울: 통일부, 2008), p.60.; 『좋은벗들』, “북, 종합시장 폐지 연기(2009.1.4.)”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1,2월(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09), p.42; 『USA 투데이』, “북주민, 자유시장 제한에 반발(2009.2.20.)”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1,2월(서울: 통일부, 2009), p.155.

91) 박형중·조한범·장용석, 앞의 책, p.60; 남궁민, “북 시장 전면통제 방침 물 건너가나?,” 『데일리 NK』, 2009년 3월 9일 재인용; NK 지식인 연대, “북 당국, 장마당 통제물품 공시, 강력한 시장 통제 시사,” 2009년 3월 17일 재인용

92)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09년 3월 15일 각 시장 정문 입구와 시장관리소들에 200여 가지에 이르는 ‘금지물품 목록’을 공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 상품의 항목으로 ‘무역회사들에서 수입된 일체의 물품’, ‘외국산 가정 전기용품(가전제품)’, ‘수입산 완구류’, ‘국가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 ‘출판물 및 수공예품’,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농토산물’, ‘개인이 만드는 대형 가구류’, ‘의약품’, ‘일체의 자동차 부품’, ‘개인이 만든 식료품과 포장하지 않은 식료품(식품)’ 등이 있다; 『좋은벗들』, “북, 시장서 음식판매 금지(2009.5.26.)”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6월(서울: 통일부, 2009), p.66.

93) 박형중·조한범·장용석, 앞의 책, p.62; 정혜영, “개인장사 통제 ‘모든 공산품 거래는 국영상점에서,’” 『열린북한방송』, 2009.5.11. 재인용.

94)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69.

월	시행내용	세부내용
7	평성 큰 장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성 시당, 인민위원회, 보안서, 시장관리소 합동단속조 활동 • “큰 장사를 하지 말데 대한” 지시 • 평성 “전국적인 장사 물품 도매지로 장사의 근원이 생기는 지역” 비판
8	평양, 여성 공장 배치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나이 제한, 젊은 여성들을 공장에 배치할 것 강조 • “여성들도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데 대한 방침” • “평양시가 지방시, 군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10	장사 연령 제한 조치	• 전국에 40세 미만 장사 금지 다시 지시
	신발 매매 금지	• 전국 시장에서 국내산 신발 판매 금지
	개인 농산물 및 수공잡화 판매	• 전국시장 상업성 결정 지시문 : “개인이 농사를 지은 납새, 과일류, 물고기 등과 일용잡화만 판매 허용”
11	농민시장으로 전환 지시(상업성 23호, 61호 지시) 연사군 제품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월 1일부터 농민시장으로 전환 발표 • 매월 1, 11일, 21일만 장사 가능 • 개인 농산물, 과일류, 일용잡화 등만 판매 허용 (식량, 공업품, 돼지고기 등 판매 금지, 식량은 배급소, 기타 물품은 오직 국가수매상점에서만 거래가능) • 함경북도 연사군 “새해부터는 일체 장사를 제한할 것이니, 그 전에 재고품을 모두 처분하라”
12	전국 주요도시 시범 농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함흥, 순천, 개성, 청진 등 전국 주요도시 시범 농민시장 실시 • 1일, 11일, 21일만 장사 허용 • 식량, 공업품 판매 금지, 농산물만 판매

(2009년)

월	시행내용	결과
1	• 전국 종합시장 폐지 및 농민시장 개편 6개월 연기	
3	•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대회(3/8)를 앞두고, 엄격한 이동통제	장사 위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청진, 시장에서 농산물 이외 상품 판매 금지 • 함남 함흥, 시장 단속과 판매율 저조로 매대 장사꾼 40% 감소 • 중국 환율 올라 물가(특히 수입공업품) 상승 	금지된 물품을 팔거나 매대비를 내지 않으려고, 골목길 장사, 방문판매, 메뚜기 장사로 전환하는 장사꾼 증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음식 판매 금지 • 전국 시장 관리 방안 관련 재강연 	
6	• 평남, 평성 시장 폐쇄 결정, 전국 도매시장 역할 한다는 이유	구역별 소규모 장마당 운영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강계 장삿집 부피가 크면 단속 (8/2부터) • 시당 “장삿집 부피를 줄여서 메고 다닐 데 대해” 강연 	상인들 냉담한 분위기

출처 : 『좋은벗들』, 2009.10.13.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2003년 5월 내각지시 등과 2004년 상업법, 기타 형법, 형법부칙,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 단속법규를 엄격히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제10조에서 “국가통제제품은 상업성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이 제한과 관련해서 제13조는 “개별적 주민들은 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 재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시 나이제한 등은 관리기관의 재량행위 또는 자체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시장 안팎의 단속행위에 관해서 제30조는 “시장안에서 상품판매와 관련한 단속, 통제사업은 시장관리소일군들이 하며 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들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의 시장담당 보안원이 한다. 시장밖에서 장사행위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검열단속 통제기관이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만,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의 적용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상품을 빼앗거나, 단속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와 같은 불법현상에 따라 범규 수범자인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견되었다.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재건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사회주의 상업체계 하의 필요최소한적인 모습으로 환원시키지 못했다.⁹⁵⁾ 또한, 국영상업망을 통한 공산품과 식량 독점판매를 시도했지만, 시장 가격과의 격차에 따라 이들 식량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국영상업망의 정상적 운영도 어렵게 되었다.

시장거래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주민들은 2005년 이후 겪게 된 강력한 통제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별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도 과거의 정책 실패를 재차 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⁹⁶⁾ 이는 당시 북한경제가 이전 시기의 회복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점, 또 그로 인하여 여전히 상품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로 2008년 3월에 있었던 주민의 집단적인 저항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당시

95)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pp.97.

96) 『좋은벗들』, “종합시장 폐지, 평양간부들 의견 분분,” 『오늘의 북한 소식』 제255호, 2008.12.02.; 『좋은벗들』, “청진시, 숨 가뻐던 1박 2일,” 『오늘의 북한 소식』 제117호, 2008.03.26.; 『연합』, “북 시장통제 심해져 주민불만 고조(2009.4.22.),”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3,4월(서울: 통일부, 2009), p.185;

주민들의 행동변화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회주의적 소유가 그 본성에 어긋나게 개인주의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면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적합한 경제관리방법은 집단주의적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던⁹⁷⁾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에 내재되었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집단적 저항으로 표출된 사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좋은벗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⁸⁾

“지난 3월 4일 청진시 시장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장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청진시 각 시장 관리소에서는 3월 3일, 나이 제한에 걸린 여성들을 모조리 시장에서 몰아내자며 매대를 시장 밖으로 내놓게 된다. 이것이 기폭제였다. 여성들은 그동안 30세 미만, 40세, 45세, 심지어 49세 미만 장사 금지 등의 조치로 장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져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아왔다. 그들은 뒷돈을 찢러주거나 나이 든 여자들과 동업을 하거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장사에 대동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장사를 겨우 이어왔다. 이런 와중에 매대를 아예 없애버리는 강경 조치에 여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다음날 4일 오후 1시부터 각 시장에는 여성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시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날 수남 시장에만 수천 명, 다른 시장에도 적은 곳은 수백 명이 모여들어 전체적으로 약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도 합세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던 아주머니들도 합류했다. 강명희(47세)씨는 “아줌마들이 시장 관리소를 찾아가서 막 성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며,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쌀을 달라”고 외치자 다른 여성들이 함께 외쳤다고 전했다. 한정애(38세)씨는 “너네만 먹고 살려는가. 우리도 절로 먹을 수 있게 장사하게 해 달라. 아니면 배급을 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고 당시 했던 말을 다시 들려줬다. “아마 남자가 있었다면 당장 잡아갔을 거다. 여자들이니까 손도 못 대고 답답해했다”며 당국이 강경진압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보안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이것을 진압하면 정말 폭동이 일어난다. 아줌마들이 흑시 다치기라도 하면 노동자들이 일어나니까 큰일이다. 여자들이 잘못 다치면 남자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가보면 동네 아줌마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97)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2008.4.27.), 『월간북한동향』, 제2권 제2호 2008년 3,4월(서울: 통일부, 2008), p.122.

98) 『좋은벗들』, “청진시, 숨 가뻐던 1박 2일,” 2008.03.26.

가까운 친척 식구들도 있으니깐 누구 하나 차마 손댈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여자들이 뭔가를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폭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옳은 말만 했기 때문에 누구도 강경 진압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배급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아내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어진 사태라 노동자들의 반응이 가장 염려됐다고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시장 관리소와 시당국이었다. 시당국은 급히 전원회의를 열었다. 다음 날까지 중앙당의 답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여성들은 그 날 밤 헤어지고, 다음 날 다시 모여들었다. 아침부터 아기를 등에 업고 온 여성, 밥도 못 짓고 나온 여성, 동네아줌마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나타난 여성들로 다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성들의 열기가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지켜본 당국은 마침내 5일 오후 시당국 차원에서 시노동국명의로 시장을 열면서 나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09년 4월부터 “현장의 생산활동 정상화”를 형식적 목표로 150일 전투를 추진하였다.⁹⁹⁾ 이와 함께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도 병행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상업의 정상화를 위한 상품 증산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당시 주민들의 불만을 분산시키고, 집단적 생산 운동을 통한 개인주의적 사고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¹⁰⁰⁾ 이어서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제5차 화폐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¹⁰¹⁾ 2009년 12월 4일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내각결정 제423호로 화폐개혁 실시를 발표하면서 화폐개혁의 목적을 “경제관리 체계와 질서 바로세우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은 100:1이며 교환기간은 2009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2월 6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다만, 저금소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10:1의 비율로 신권을 교환해주었지만, 기간

99) “‘150일전투’는 2009년 4월 20일 시작하여 9월 16일 종료된 대중 총동원 증산운동이다. 성과가 미흡하자 곧이어 ‘100일전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보』, 제45집 제5호(서울: 한국정치학회, 2011), p.186; ‘150일 전투’에 관해서는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7호(2009.5.19),”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6월(서울: 통일부, 2009), p.45; 『열린북한방송』, “열린북한통신 제13호”(계재일 누락),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6월(서울: 통일부, 2009), p.45.

100) 정형곤 외(2012)도 당시 150일 전투 추진에 대하여 상품증산을 위한 것으로 다루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형곤·김병연·이석, 앞의 책, p.70.

101) 그 이전부터 북한이 화폐개혁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장마당 같은 곳에서 떠돌았으며, 달러나 유로, 중국 돈 등 외국 돈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전쟁·화폐개혁 우리 주민들 ‘달려 사재기,’” 2009.4.9.

내에 환전하지 않은 돈과 외국에 있는 화폐에 대해서는 교환을 할 수 없었다. 교환 한도는 가구당 1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종전 수준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구권의 신권 교환율이 100:1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임금을 100배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제5차 화폐개혁 결과 그동안 시장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해왔던 중소기업, 일반 주민은 북한 당국에 재산을 환수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⁰²⁾ 또한,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과 동시에 시장을 폐쇄하고 개인 영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장에서 상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¹⁰³⁾ 그리고 화폐개혁의 후속 조치로 외화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⁰⁴⁾

화폐개혁의 배경에 대하여 인플레이션 완화를 통한 물가안정, 시장화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척결하는 동시에 자본가화 되고 있던 ‘돈주’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⁵⁾ 2002년 7.1조치 이후 시장 수용적 접근에서 인정해 오던 시장 정책을 2005년 이후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사회주의 상업체계 재건으로 급격히 전환한 이후 화폐개혁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화폐개혁의 성격이 반(反)시장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¹⁰⁶⁾는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

102)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화폐개혁에도 근심이 없었지만, 이번 화폐개혁에서 제일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은 중소기업들, 영세한 주민들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 “북 화폐개혁, 중소기업들 가장 큰 피해,” 2009.12.1.

103) 조명철,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정세와 정책』(경기: 세종연구소, 2010), p.7.

104) 외화사용을 금지시키고 바꿈돈을 사용하게 되자, 외화상점에서 팔던 물품들이 함경남도 와 함경북도 등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꿈돈은 개인이나 회사가 외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외화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바꿈돈으로 외화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북쪽에 내다팔던 사람들이 자연히 감소하게 됐다. 북쪽 시장에서는 물품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해지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연쇄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좋은벗들』, “외화 사용 금지 이후 함경도 물가 올라,” 321호, 2010.1.5.

105)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리용문제는 돈을 쓰는 당사자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하여 많이 달라지게 된다. 돈을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화폐를 이상화하는 낡은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서는 화폐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여 그것에 만능의 힘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화폐관계를 끊임없이 확대시켜 사회주의경제관계를 좀먹을수 있다. 돈에 대한 낡은 관점을 없애야 화폐를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리원경, 앞의 글, p.40.

10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제1718호(2006년 10월)에 비하여 제1874호(2009년

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이전 보다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물자공급에 차질을 빚게 했고, 그 결과 시장 통제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게다가 화폐개혁 직후 환율 폭등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조치,¹⁰⁷⁾ 쌀값 등 물가 급등¹⁰⁸⁾의 현상 등에 따라 북한 주민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¹⁰⁹⁾ 특히, 시장폐쇄는 국영사업장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과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하였다는 대북소식지의 내용도 확인되었다.¹¹⁰⁾ 이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던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생존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주민의 집단적인 저항 행태가 소요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시장 재개장 및 단속 완화 등을 통하여 체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긴급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¹¹⁾ 북한 당국이 실시한 소위 ‘5.26 당 지

6월)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에 대한 감축 노력 등을 포함함으로써 2006년 제재 보다 그 수위가 높아졌다.

- 107) 『좋은벗들』, “주요 도매시장 잇달아 폐쇄(2010.1.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22; 한편,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APTN과의 인터뷰에서 “환율 변동 직후 초기에는 시장 가격이 고정되지 않아 며칠 동안 시장이 폐쇄됐지만 이제는 모든 시장이 열려 인민들이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연합뉴스』, “북 학자, 화폐개혁 이후 혼란 없었다(2010.4.1.),”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4월(서울: 통일부, 2010), p.64.
- 108) 『좋은벗들』, “북, 물가 폭등...주민들 망연자실(2010.1.2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71; 『데일리NK』, “북, 화폐개혁 후 평양 쌀값 ‘59’배로 올라(2010.3.15.),”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4월(서울: 통일부, 2010), p.31
- 109) 『좋은벗들』, “종합시장 취소 소식에 주민들 불만 표시,” 254호, 2008.11.25; 『좋은벗들』, “북, 물가 폭등...주민들 망연자실(2010.1.2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71; 『동아일보』, “북 시장 마비...단속원, 주민 곳곳 충돌. 화폐개혁 후 극심한 혼란(2010.2.3.),”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94.
- 110) 『좋은벗들』, “북, 식량난 심각...‘아사자’발생, 급속히 전역 확산(2010.2.1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117; 『좋은벗들』, “북, 식량난 심각... 집단 아사 농촌까지 확산(2010.6.17.),”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3호 2010년 5,6월(서울: 통일부, 2010), p.106.
- 111) 『연합뉴스』, “북, 화폐개혁 주도 노동당 간부 경질(2010.2.4.),”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92; 『중앙일보』, “화폐개혁 후 금지했던 북한 시장 다시 열림(2010.2.5.),”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94; 『자유아시아방송』, “북 장성택, 화폐개혁 혼란 수습 주도(2010.2.12.),”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102; 『좋은벗들』, “다급해진 북, 시장 열고 식량거래 단속말라(2010.2.18.),”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2월(서울: 통일부, 2010), p.118; 자유북한방송, “북, 반시장 조치 잇달아 철회...‘뺨기발’분배(2010.3.22.),” 『월

시¹¹²⁾에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관하여 『좋은벗들』이 소개한 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교환 조치에 따른 무역중단 상황을 회복시키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를 위한 무역 관련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각 기관,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식량공급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셋째, 보안성에 대하여 식량사정이 악화될수록 주민들의 동요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히 살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특히 폭력사건의 방지를 위하여 개인 집의 톱 등을 포함한 “흉기 될 만한 것들을 몽땅 몰수하라”고 명령하였다.¹¹³⁾ 넷째, 시장에 대한 통제를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운영시간 제한, 매매물품 통제, 나이 제한 등 모든 종래 강력히 실시하였던 시장 통제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보안성에 대하여 장사 단속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되, 단속 상품을 빼앗거나, 단속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5.26 당 지시’는 당시 쌀값 등 물가 폭등 문제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¹¹⁴⁾ 이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주민의 시장 경험의 축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전과 같이 다시 주민들은 시장에서 ‘자력갱생’으로 분주한 삶을 살게 되었고, 북한 당국이 우려하였던 주민의 집단 저항 우려도 수면 아래로 잦아들게 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던 2012년말 까지 국내외 문헌에서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에 관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외 보도자료에서도 시장에서 일부 세습비판 소문과 동영상 유포 등의 기사¹¹⁵⁾를 제외하고,

간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4월(서울: 통일부, 2010), p.44.

112) 『좋은벗들』에 따르면, 2010년 5월 26일 노동당은 “어려워진 식량 사정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됐다.”며 당분간 국가 차원의 식량(배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내각과 각 부문들도 ‘현재 조선의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지시문을 각 산하 단체에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일부 노동당 간부들이 ‘5.26조치’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40호,” 2010.6.14.

113) 그 밖에도 탈북자 중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경우 그 가족을 무조건 추방하고, 한국 등 북한 이외 지역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화소에 수감시킬 것과 같은 체제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확인된다.

114) 시장 전면 허용 조치로 그동안 쌀을 보유하고 있던 주민들이 쌀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으로서 시장으로 쌀 공급의 증가가 쌀값이 빠르게 안정화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 “북, 쌀값 폭등세 지속... 열흘 새 50% 상승(2010.8.2.)”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4호 2010년 7,8월(서울: 통일부, 2010), p.90; 『자유아시아방송』, “북 시장 쌀가격 추수절 맞아 대폭 하락(2010.10.3.)”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0), pp.142-143.

115) 『자유아시아방송』, “북, 주민들 세습비판 차단에 안간힘(2010.10.8.)” 『월간북한동향』, 제4권

‘5.26 당 지시’이후 쌀값, 환율 등의 등락, 시장화에 따른 암거래와 주민들의 생활변화와 같은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⁶⁾

2) 상업법제의 변화

‘5.26 당 지시’와 거의 같은 시기인 2010년 5월 18일 상업법도 개정되었다. 2004년 상업법이 농민시장 내 암거래를 양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던데 대하여 2005년 이후 2009년 화폐개혁 기간 전후의 북한 현실의 모습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에 시장 수용적 접근과 반(反)시장적 접근이 확연히 교차하였으며, ‘5.26 당 지시’이후 다시 시장 수용적 접근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개정 상업법은 당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시장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개정 상업법의 내용에 없었던 ‘수입’ 계획이나 상품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5.26 당 지시’의 내용에서 무역부문을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며, 당시 북한 내 수입상품의 의존도가 커진 현실과 특히, ‘150일 전투’와 같은 내부자원 동원방식의 실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관련한 중요한 조문변화는 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4년 개정 상업법이 이전 개정 상업법상 ‘사회주의상업의 보충적형태’를 삭제했던 것과 달리 2010년 개정 상업법은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2003년 5월 내각지시 제24호를 비롯한 일련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¹¹⁷⁾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수 없다. 시장밖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제5호 2010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0), pp.96-97; 『자유아시아방송』, “북, 장마당에 ‘3대 세습 비난’ DVD 나돌아(2011.1.20.)”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1호 2011년 1,2월(서울: 통일부, 2011), p.58.

11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4호 2010년 7,8월(서울: 통일부, 2010), p.48, p.74, p.90;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0), p.13, p.95, p.116, p.140, p.141, pp.142-143, p.212;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1호 2011년 1,2월(서울: 통일부, 2011), p.15, p.36, p.134;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2호 2011년 3,4월(서울: 통일부, 2011), p.106;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1호 2011년 1,2월(서울: 통일부, 2011), p.15, p.36, p.58, p.134;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2호 2011년 3,4월(서울: 통일부, 2011), p.106;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3호 2011년 5,6월(서울: 통일부, 2011), p.13, p.71, p.173, pp.192-193;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5호 2011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1), p.65, p.112, p.180;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6호 2011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1), p.31, p.130, p.149, p.156, p.157, p.158.

117) 내각결정 제27호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제12조는 “시장에서 상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하여 팔고 사며 중요지표의 상품들은 한도가격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팔고 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없다.”고 법상 명시하였다.

한편, 상법법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2003년 5월 내각지시 제24호를 비롯한 일련의 규정이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2010년 개정 상법법의 변경된 내용을 볼 때 특별한 개정 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법의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표 3-8>과 같다.

<표 3-8> 상법법 전후 대비(2004년 및 2010년 개정법)

개정 상법법(2004년)		개정 상법법(2010년)	
§10	상품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라 상품 생산과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주문제)	상품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수입,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상업 및 상품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도매상업 기관, 기업소가 한다.	§12 (상품공급계약)	상업 및 상품생산, 수입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생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도매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생산, 수입된 상품을 소매상업기관, 기업소가 직접 인수할수도 있다. <3문신설>
§38	상업기관, 기업소는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38 (여유물건의 수매와 수매자의 신분확인금지)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81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상점, 식당, 봉사조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81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영업허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개정 상업법(2004년)		개정 상업법(2010년)	
§82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품류통계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 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품 생산, 공급, 계획은 마음대로 삭감조절할 수 없다.	§82 (상품류통계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품류통계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 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계획은 마음대로 삭감조절할 수 없다.
§84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84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 양성)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86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86 (시장의 관리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수 없다. 시장밖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문 신설>
§88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거래한 상품과 돈을 몰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식당, 봉사소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린다.	§88 (위약금, 몰수, 운영중지, 벌금)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거래한 상품과 돈을 몰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국가가격제정기관은 승인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영업하는 상점, 식당, 편의봉사장은 운영을 중지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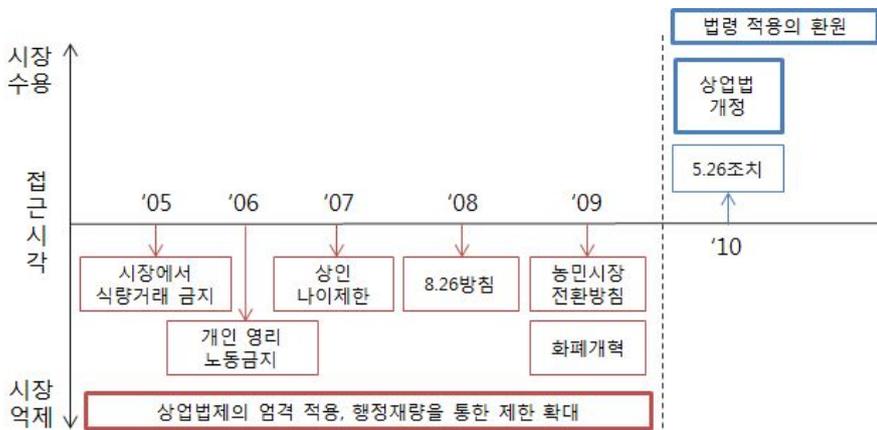
3) 평가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일련의 시장정책은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경제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수용적 입장과 반(反)시장적 입장이 명확히 교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들 양 입장들의 목표 지향점은 같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완전승리’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

북한 당국은 2010년 상업법 개정을 통하여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보조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과거 2004년 개정 전 상업법상 ‘보충적형태’로 규정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개정 상업법이 ‘보충적

형태'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후 2010년 5월 개정 상업법이 반(反)시장적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수용적 입장으로 진일보한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사전에 따르면 보충은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의 의미로, 보조는 “보태어 돕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¹¹⁸⁾ 즉, ‘보충’이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따른 유통망 부족을 메우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데 대하여 ‘보조’는 사회주의 상업체계에 따른 유통망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¹⁹⁾ 결국, 2010년 개정 상업법이 시장을 ‘보조적 공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된 공간이 여전히 국영 상업망인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보충적형태’에 지나지 않았던 농민시장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 적극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업법제의 개정은 같은 시기에 소위 ‘5.26 당 지시’라고 하는 시장 수용적 입장과 동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4>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2005년-2011년)

한편, 위와 같은 정책전환과 이에 따른 상업법제의 변화는 이전 시기에서 예견되었던 문제 즉,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의한 폐해와 인플레

11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p.645-646.
 119) “북한에서 시장에 의한 주민공급은 2003년만 해도 상업부문이라는 개별적 영역에서 상품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면, 이후에는 상품공급이 충족되었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전반적 경제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김영희·김병욱,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서울: 통일연구원, 2015), p.138.

이선 상승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2009년 화폐개혁의 문제에 대응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가 경제난 타개라는 북한 당국의 현실적 이해타산의 산물로 파악될 수 있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시장경험에 따른 주민의 의식도 그 변화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과거 북한 주민을 시장정책 결정에서 상수로 인식하였다면, 이제는 한정적이지만 변수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제2 시장 확산기(2012년-현재)

1) 시장정책의 전개

2010년 9월 김정은이 당대표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북한 당국은 김정은 후계구축의 정당성을 김일성의 사상 계승, 집단주의에 입각한 ‘일심단결’등의 논리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전하였다.¹²⁰⁾ 이후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정권세습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같은 달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데 이어 2012년 4월 조선노동당 제1비서직,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가 최고직책을 모두 차지하였다.¹²¹⁾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의 사상체계 계승이라는 후계구축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고, 국가 최고직책을 차지하였다고 하여도 조직에 대한 철저한 장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집권 초기 김정은이 선택한 시장정책은 기존의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의 틀에서 파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시장화에 관한 일부 국내연구에서도 2012년 이후 김정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실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¹²²⁾도 이러한 정치 환경적인 맥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2012년은 2002년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이하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김정일의 사설에서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밝히고,¹²³⁾ 7.1조치를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의 북한 경제는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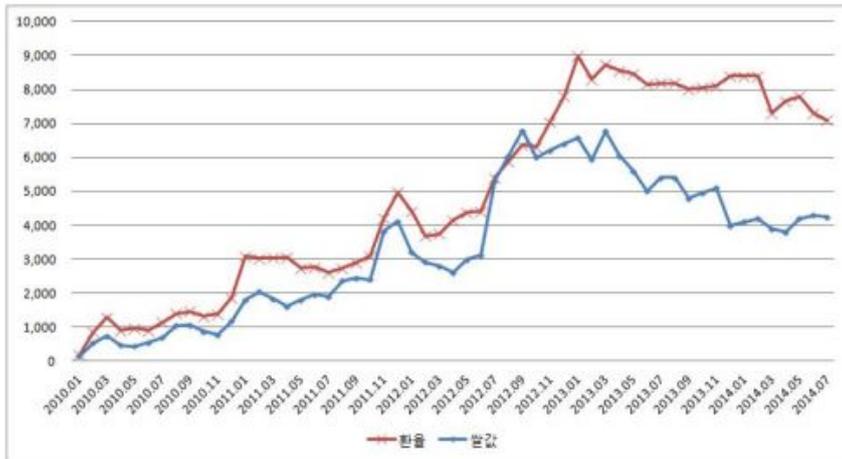
120) 고유환, 앞의 글, pp.179-180, p.189.

121) 이갑준, “김정은의 만경대혁명학원 현지지도와 후계체제 공고화,” 『북한학보』, 제39집 1호 (서울: 북한학회, 2014), pp.73-74.

122)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4호(서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pp.185-186;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66.

123) 이갑준, 위의 글, p.100.

의 <그림 3-5>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화폐개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¹²⁴⁾ 7.1조치의 배경이 된 것도 물가상승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과제로 내세웠던 김정은에게는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한 김정은 식 해법을 서둘러 제시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실패했던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그리고 화폐개혁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¹²⁵⁾ 김정은은 전면적 시장정책 보다는 실험적이면서 단계적인 시장정책과 같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이석(2014), 『데일리NK』, 주: 평양기준

<그림 3-5> 북한의 시장 가격과 환율 추이 (단위: 원/달러, 원/kg)

2012년 6월에는 소위 ‘6.28방침’으로 불리는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체계’¹²⁶⁾라는 경제정책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¹²⁷⁾

124) 이석(2014)에 따르면, 2009년 화폐개혁을 계기로 초(超)인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었으며, 2013년을 정점으로 점차 안정되어 2014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석,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관찰, 분석, 그리고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7월(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p.5.

125) 한편, 고유환(2011)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은 추후도 어길 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고 밝히고, 개정 당규약에 김일성의 유훈과 업적을 명문화함으로써 후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고유환, 앞의 글, p.186.

126) 북한 내에서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로 불리다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61.

127) 양문수(2014)는 김정은 시기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연구자들 간의 적지 않은 견해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소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제시하였던 ‘우리식 경제관리체계’는 과거 7.1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²⁸⁾ 그 내용과 성격도 7.1조치와 유사했으며,¹²⁹⁾ 상품의 생산과 공급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물가상승 문제도 7.1 조치 당시와 유사하였다.

7.1 조치 시행 당시와 같이 대외적으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전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우리식 경제관리체계’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7.1 조치보다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생산단위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대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한 것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¹³⁰⁾ 또한,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진행방식을 채택했던 7.1조치와 달리 점진적인 진행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2012년 6월에 알려진 ‘우리식 경제관리체계’는 그 해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데 이어 201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2014년 중에도 ‘시범 운영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¹⁾ 2014년 이러한 ‘우리식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확대의 움직임도 확인된다. 소위 ‘5.30 조치¹³²⁾’로 알려진 것으로 이에 대한 실체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초기의 시범 운영 단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¹³³⁾

개는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p.61-62.

128) 양문수(2014)는 “이러한 시도가 김정은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정일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7.1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고 2013년 5월 15일자 『조선신보』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63.

129) 2012년 7월 22일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북한의 신경제정책을 국가 투자와 시장가격 등의 도입 등으로 표면상 개혁개방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북한, 신경제정책 10월 시행 전망(2012.7.22.),” 『월간북한동향』 제6권 제4호 2012년 7,8월(서울: 통일부, 2012), pp.35-36.

130) 언론 매체 등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요내용은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pp.185-186.

131) 양문수(2014)는 북한의 『노동신문』 2013년 4월 2일자 기사와 『조선신보』 2013년 5월 15일자 기사를 인용하며, 순차적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 ‘새로운 조치들의 시범적 시행’해 왔음을 소개하는 한편, 『조선신보』 및 2014년 4월 4일자 ‘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작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생산단위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여나가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편, 『조선신보』는 이후 2014년 1월까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시범 운영 단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64.

132) 『세계일보』, “‘시장경제 확대’ 북 5.30조치 확인 『조선신보』 ‘김정은 작년 5월 담화 과업 관철 위한 대책 집행’ 밝혀,” 2015.1.9.

133)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65.

한편,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과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생산단위의 자율성,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유통은 여전히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전의 7.1조치를 경험했던 북한 당국이 더욱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종합시장제도와 같은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점진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 시기에 추진하였던 급진적 시장정책의 실패는 더욱 새로운 시장정책 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전시기부터 지속되었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현실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제상황이 이전시기 이후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더라도¹³⁴⁾ 이제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은 해외 노동자 파견과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반(反)시장적 정책을 내놓을 경우 체제유지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연계하여 곡물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도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¹³⁵⁾ 북한 당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사회주의적’현상에 대한 제도적인 근절책 마련보다는 동 현상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시장 단위의 지협적인 통제를 병행하는 한편, 국영상점망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정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협동농장 내 ‘구매소’ 등 국영 상업망 기능의 정상화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상업체계 내로 흡수하려는 모습도 확인된다.¹³⁶⁾

화폐개혁 이후 시장에 대한 제도 차원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10년 상업

134) 앞서 <표 3-1>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 계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11년부터 양(+)을 보이고 있다.

135) 『로이더 통신』은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로이더 통신』, “북, 농업개혁 추진...곡물 시장거래 허용(2012.9.4.)” 『월간북한동향』, 제6권 제5호 2012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2), p.49.

136) 『조선신보』, “북한, 자정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등장...시장기능 확대(2015.1.19.)”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1호 2015년 1,2월(서울: 통일부, 2015), p.79; 『조선신보』, “시장경제 도입은 했는데...북한, 부작용 방지책 ‘고심’(2015.2.22.)”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1호 2015년 3,4월(서울: 통일부, 2015), p.41; 『연합뉴스』, “북한, 장마당 이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도 인기(2015.4.3.)”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2호 2015년 3,4월(서울: 통일부, 2015), p.99.

법이 개정된 이후 시장에 대한 전면적 제도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2003년 종합시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품 설정과 같은 기존 규제의 범주 안에서 북한 시장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했다. 더욱이 시장은 개인 상인과 검열단속 통제기관, 지방정권 기관 등과의 결탁 등 북한 당국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¹³⁷⁾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확산과 이에 따른 암거래 증가에 우호적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 반면, 과거와 같은 국영상업망 정상화 시도는 점차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만약,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국영상점들이 낮은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더라도 이는 시장에서 재정거래(裁定去來)로 이어져 다시 시장기능이 확대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상품 생산과 공급이 부족한 북한경제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 같은 국영상업망에 대한 정상화 노력은 선전용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¹³⁸⁾ 실제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 시장들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¹³⁹⁾ 북한 기관들의 ‘돈주’와 같은 시장 세력과의 결탁 현상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⁴⁰⁾ 그 밖에도 국정가격의 유명무실화 현상,¹⁴¹⁾ 개인에 의한

-
- 137) 『미국의소리』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북한에서 개인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2013년 이후 탈북자 12명을 면담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상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소리』,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개인 상업활동 극도로 탄압’(2015.4.3.)”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2호 2015년 3,4월(서울: 통일부, 2015), p.99.
- 138) 『데일리NK』, “김정은 극찬한 ‘관광상점’ 상품 질 떨어져 파리날려(2015.12.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160.
- 139) 이 시기에 시장화 확산에 관해서는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비 공식 장마당도 많아(2015.10.25.)”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5), p.160; 『연합뉴스』, “미 전문가, 신의주에서 최근 시장규모 빠르게 확대(2015.10.31.)”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5), p.181; 『연합뉴스』, “정보당국, 북 장마당 하루 100만-180만 명 이용(2015.12.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184; 자유아시아방송,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북 합법시장 400개 넘어(2015.12.24.)”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184; 자유아시아방송, “북,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2015.12.29.)”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199.
- 140) 『데일리NK』, “북 개인 제조업 성행...‘국영공장까지 임대’(2015.10.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5), p.181; 『자유아시아방송』, “북 장마당에 가짜 UN약 범람(2015.10.28.)”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5), p.180; 『데일리NK』, “북 보안원, 북한돈 달러 환차익으로 막대한 돈 벌어(2015.11.24.)”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92; 『데일리NK』, “북 외화벌이 회사, 무역와크(허가증) 장사로 돈방석(2015.12.8.)”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140.
- 141) 『데일리NK』, “북 시장에서 ‘국정가격 얼마요’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2015.11.13.)”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50.

다양한 상업 활동과 생산,¹⁴²⁾ 개인주의와 배금주의와 같이 북한 당국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따른 주민의 생활상의 변화 등¹⁴³⁾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장화의 빠른 진전에 불구하고, 국영상업망의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소식은 확인하기 어렵다. 상기한 일련의 상황들은 7.1조치 이전 시기와 종합시장제도 시행 후 2005년까지의 흐름과도 유사하다.

한편, 북한 당국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이제는 거의 사라진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용어들을 대거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계획을 재천명하였다.¹⁴⁴⁾ 경제관리에 대한 담론구조가 보수적 국면으로 진입하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전시기에 반(反)시장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경제질서가 강조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7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70일 전투’, ‘200일 전투’라는 내부자원 동원 실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되는 모습도 반(反)시장적 정책을 전개하였던 2009년 시기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경제상황은 이전 시기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2006년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지만, 2016년 상반기 경제상황과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¹⁴⁵⁾ 둘째, 김정은 집권기 이후 실시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점진적인 진행방식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시장정책에서도 단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예견케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따라 해외로부터 재정을 충당하기

142) 『자유아시아방송』, “북 환전상, 송금업까지 취급(2012.9.24.),” 『월간북한동향』, 제6권 제5호 2012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2), p.49; 『자유아시아방송』, “북, 자본주의 생산방식 목인(2015.11.2.),”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27; 『미국의소리』, “북, 장마당에 ‘주택 브로커...이색 자영업자 속출(2015.11.28.),”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96; 『데일리NK』, “북주민, 겨울철 딸기 오이 하우스 재배로 수천달러 수익(2015.11.30.),”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96.

143) 『연합뉴스』, “북 주민, 김치 점점 덜 담가...‘장마당 증가 영향’(2015.10.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10월(서울: 통일부, 2015), p.180; 『데일리NK』, “북 대학생, 통화도 안하면서 핸드폰 ‘꼭’ 갖고 다니는 이유(2015.11.1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69; 『데일리NK』, “북 올해 왕가품 수해에도 개인 소토지 빼기받은 풍년(2015.11.24.),”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91; 『연합뉴스』, “북 학교서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2015.11.11.),”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48; 『데일리NK』, “북 대학생, 빵이 든 주머니 들고 장마당 가는 이유(2015.12.29.),”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12월(서울: 통일부, 2015), p.199.

144) 이석,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p.17.

145) 이석,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pp.18-20.

어렵게 된 현실에서 시장은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넷째, 이전 시기에 단순히 여성 위주의 장사를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렸던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여성 이외에 남성, 그리고 학생층들의 시장 참여, 소득의 차이와 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 등 다분화되고 다층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 시장에서 생존방식을 익혔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시장 통제 속에서 삶을 영위했던 소위 ‘장마당 세대’들의 시장 참여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펼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이다.¹⁴⁶⁾ 여기에 권력층이 연계됨으로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유통 구조가 기존 사회주의 상품유통 구조를 대체할 정도로 상당히 성장하였다. 반(反)시장 정책은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기업소, 기관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북한 내 경제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 시기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전면적으로 반(反)시장적 정책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¹⁴⁷⁾

2) 상업법제의 변화

이 시기에 상업법제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6월에는 소위 ‘6.28방침’으로 불리는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체계’가 실시된 이후 동 체계의 확대 움직임으로 2014년 소위 ‘5.30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침들이 상업법과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의 개정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¹⁴⁸⁾ 2010년 상업법 개정 이후 시장에 대한 전면적 제도 수정이 없는 상태에

146) 유엔 워치 등 20개 비정부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한 탈북 여대생 박연미씨는 “김일성 사후 식량 배급체계가 무너졌고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암시장밖에 없었다.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와 90년대에 태어난 나의 세대는 규칙을 어기더라도 시장에 참여해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장마당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변하게 됐고, 이것은 북한 독재정권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탈북 여대생, 북에도 장마당 세대가 있어 희망적(2015.2.25).”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1호 2015년 1,2월(서울: 통일부, 2015), p.190.

147) 이석(2016)은 “향후 북한경제 내부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항하여 경제적인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딜레마가 시작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통제를 강화할 경우 “①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후생이 감소하며, ②이로 인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③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자칫 김정은 정권 자체의 혼란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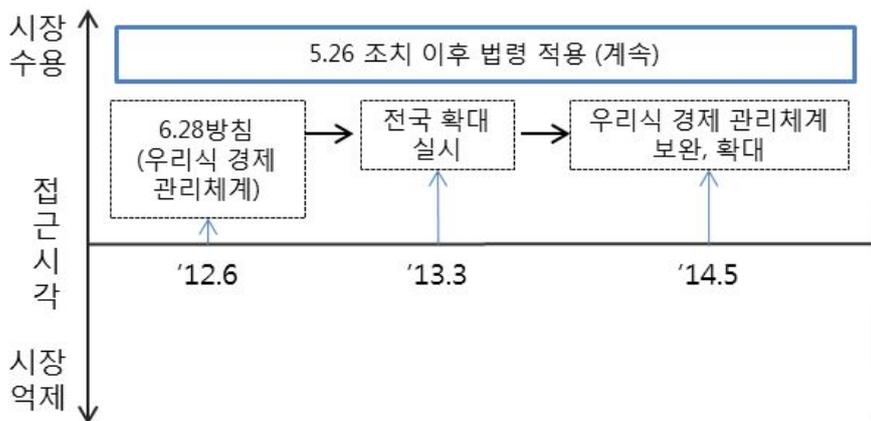
148) 북한법연구회가 발간한 2015년 북한법령집에도 2010년 개정 상업법을 현행 법령으로 소

서 기존의 2003년 종합시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이상과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의 시장정책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당국이 보였던 정책적 방기와 같은 ‘목인’이라기보다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적인 ‘점진적 시장 이용’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장화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급진적 시장정책에 대한 잠재적 저항세력의 확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유통 구조의 성장 등은 현재까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이었던 시장을 ‘독립적 공간’으로 이행을 촉진하는 하나의 변인(變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력, 상품생산 및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당분간 시장정책에서 시장 수용적이거나, 제약적 정책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시장정책과 북한 주민과의 잠재적 갈등관계를 조절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은 당분간 통제품 설정과 같은 기존 상업법제상 규제의 범주 안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시장정책과 상업법제의 변화(2012년-현재)

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이 출판된 2012년 이후 3년 기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의 전문 또는 해당 조문을 수록하고 있는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에서도 상업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제4장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제1절 서설

앞서 제3장에서 북한의 시장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시장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정책과 법제는 그 주요 수범자가 북한 주민인 점에서 이들 제도가 일정 부분 북한 주민을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 주민이 그동안 시장 경험을 축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에 대한 반응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2년 ‘비사회주의 그루뵀’ 결성을 통한 시장 단속, 2002년 7.1조치 직후의 시장 활동의 제약 상황, 더 나아가서 2005년 이후 시장 억압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 일정한 형태의 행위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시장경험 축적에 따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북한 주민의 일반화된 신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⁴⁹⁾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주민의 시장경험 축적, 시장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의식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의식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제도의 경우와 같이 시계열화하여 관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즉, 주민의 의식변화는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이라는 일종의 학습과정을 통한 관점전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¹⁵⁰⁾ 어느 특정 시기를 구분하여 의미 있는 의식 변화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는 북한 주민의 의식에 관한 면담기록을 통하여 변화된 의식의 특성을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존연

149) Smelser(1962)는 ‘집합행동이론’에서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집합행동이 6개 단계의 가치 부가(value added)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 6개 단계는 i)구조적 유발(structural conduciveness), ii)구조적 압력(structural strain), iii)일반화된 신념(generalized belief), iv)유발 요인(precipitating factors), v)집합행동 동원(mobilization), vi)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말한다. 동 이론에 비추보면, 북한 사회의 구조적 경제난,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 갈등을 거쳐, 시장에서 삶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일반적 신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0) 조정아 외(2010)는 “학습이란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개정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관점을 형성해 나간다. 자신의 의미관점에서 타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일상적으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의미관점의 재검토와 전환이라는 관점전환학습이 일어난다.”는 J.Mezirow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KINU 연구총서 10-12(서울: 통일연구원, 2010), p.5; J.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pp.33-36 재인용.

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하여 주민의 의식을 연구한 것들이다. 이들 기존연구의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그 밖에도 일부 논문에서 확인되는 면담기록도 참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변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이 수행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동 설문조사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105-149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동 설문조사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의 안배와 같은 면접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본 연구의 면담기록의 내용을 검증하고, 또한 일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¹⁵¹⁾

<표 4-1> 기존연구의 서지사항

저자	책 제목	발행처 및 발행일자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2007년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2010년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및 주민의식 변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2010년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통일연구원, 2011

제2절 주민의식 변화의 특성

1. 시장에 대한 인식

1) 면담기록 조사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력으로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¹⁵²⁾ 농민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을

151) 조정아 외(2010)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나 거시담론, 실증적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북한이라는 사회실재의 복잡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조정아 외, 앞의 책, p.5.

152) ‘고난의 행군’ 이전시기에 면담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서재진(1994)는 귀순자의

거래하는 소위 ‘암거래’를 통하여 식량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주민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은 북한 당국이 강조하였던 ‘자본시장 요소’의 폐해가 나타나는 부정적인 공간이면서 필요최소한성에 입각한 예외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장사꾼이란 참 나쁜 것”, “장사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당시 다른 주민들의 태도에 대하여 “국가를 위한”, “충성했던 사람”, “고지식”등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간접적인 증언을 통해서도 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¹⁵³⁾

그러나 당시 경제난 가중으로 그동안 실시되었던 배급을 중단하는 등 국영사업망에 의한 생필품 공급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영사업망의 공백을 시장을 통한 거래로 메우게 되었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시장 거래도 빠르게 확산되었고, 주민들의 북한 당국과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면담기록에서 피면담자들은 대체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방기를 이유로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 시장을 생계를 위한 필수 공간으로 진술하고 있다.¹⁵⁴⁾

2) 평가

과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장경험이 증가하고,¹⁵⁵⁾ 장사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의 설문조사에 따른 장사경험의 결과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증언을 기초한 연구에서 “1980년대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외제 가전제품을 사들이고 자식들을 대학공부 시키며 이웃에 돈을 꾸어줄 정도로 여유 있게 잘 살게 된 것을 보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장사를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하는 정도로 확산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통하여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제진, 앞의 책, p.33.
- 153)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p.62;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KINU 연구총서 07-06(서울: 통일연구원, 2007), p.120; 조정아 외, 앞의 책, p.100, p.101;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및 주민의식 변화』(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0), p.71, p.67.
- 154) 이교덕 외, 앞의 책, p.120; 조정아 외, 앞의 책, p.100; 최대석 외, 앞의 책, p.26, p.39, p.71.
- 155)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장사경험은 2012년 69.8%에서 2015년 76.7%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그 중 전업 장사도 같은 해 기준 11.2%에서 20.7%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장용석, “시장화와 소득·세대·지역 분화,”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p.20-21.

<표 4-2>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명	88	38	126
	%	69.8	30.2	100.0
2013년	명	99	34	133
	%	74.4	25.6	100.0
2014년	명	104	45	149
	%	69.8	30.2	100.0
2015년	명	112	34	146
	%	76.7	23.3	100.0
전체	명	403	151	554
	%	72.7	27.3	100.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한편,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학력자들의 장사경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당원의 장사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상업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고려할 때, 당원들도 다수 장사경험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장에 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⁶⁾ 즉, 북한 당국이 시장 정책과 법제를 전개하면서 시장관리 조직을 편성하고, 시장시설에 대한 정비 등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적 공간성을 획득한데 따른 영향도 일정하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 대한 의존과 긍정적 인식 전환은 다음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의사들 월급이 3,300원(북한돈) 밖에 안 되서 와이프가 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무산광산에서 나오는 기름을 팔았습니다. 산꼭대기(무산광산)에서 운수들이 한키로 2천원에 파는 걸 사서, 5천원에 파는 식으로 해서 돈을 벌니다. 우리집에서 기름을 받아서 청진에 내보냈습니다. (기름을 파는 것)을 걸릴 때 마다 보안원에게 돈을 고이면 됩니다. 우리집이 기름장사한다는 것을 아니깐, 대위 영감들이 와서 손님이 오니깐 돈 좀 달라고 합니다. 군관들이 말하면 해줘야 합니다.” (사례11)

“나는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이 1800원인데, 풍년 담배 한 갑 가격입니다. 계획 수행을 못하면, 월급도 다 못 타고. 원료기지는 일할 게 없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된장하는 원료가 콩인데 콩을 생산하는 건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없고, 먹을**

156) 장용석, 앞의 글, pp.22-23.

것도 안주니까. 하루 무단하고 나와서 일하면 삼일 먹을 걸 주니까.” (사례9)

결국,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험,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화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이 혹독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수록 장사의 속성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주민의 의식에 확산될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2.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자유주의

1) 면담기록 조사

1990년대 초반에 탈북한 귀순자의 증언을 기초로 연구한 문헌에서 당시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 사고의 확산에 대해 같은 맥락의 증언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¹⁵⁷⁾ 그 내용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내 것만 있으면 산다는 개인주의적 의식의 확산과 함께 장사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제 당원이 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합영회사가 설립되고 외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었다.”, “남녀 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전에는 정치적인 토대를 중시했으나 지금은 재산을 중시한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는 북한 주민의 시장 경험이 축적될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주민이 갖고 있었던 국가 중심적이거나 집단주의적 사고는 훼손되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는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사고 변화의 원인은 주민 개인의 ‘생존’이라는 내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체제에 대한 의존 포기”, “집단을 위한 헌신에 대한 부정”과 같이 외면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삶을 방기하였던 시간이 장기화되자 “겉으로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만”과 같이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불신 등의 감정도 면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¹⁵⁸⁾

한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심화, 그리고 외부정보 노출의 확대에 따라 개인의

157) 서재진(1994)의 연구 중 귀순자[(안혁(1992.8.26. 귀순), 고청송(1993.6. 귀순), 박수현, 윤웅, 백영길(1994.3.11. 귀순), 여만철(1994.4.30. 귀순)]의 증언; 서재진, 앞의 책, p.28, pp.43-44.

158) 이교덕 외, 앞의 책, p.55, p.77, p.121; 최대석 외, 앞의 책, p.65, p.67.

자유 의식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주민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 사고가 개인 중심으로 상당히 이전되고 있다. 면담 기록에서 돈에 대한 집착, 개인이나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 등에 관한 증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실제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 당국의 단속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이외에도 부유층의 주민들도 한국 비디오물 시청을 계속하거나, 한국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증언도 확인되었다.¹⁵⁹⁾

2) 평가

위와 같은 면담기록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 이전시기 보다 더욱 확장된 영역에서 집단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 사고가 개인 중심으로 상당히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지정한 한국 비디오물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죄’ 의식 없이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심화, 외부정보 노출의 확대 등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국가 중심적 사고가 개인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증언은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영역 전반에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배금주의적, 물질만능주의적 성향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동안 구조화되고 있었던 관료부패, 권력 유착 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돈 벌이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에서부터 그 밖에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바빠서 학생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인민반에서는 모두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말이 의무교육이지 돈돈돈 하니까...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가 심해서 밀수는 힘들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나진을 통해서 중국물건을 들여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강도 쪽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밀수한 물건을 등짐으로 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개성공단 물건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만강으로 밀수한 것 같은데,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릇, 이불, 유별나게 좋더라 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물건이 오면서 중국 게 잘 안 팔렸습니다. 개성공단 물건이 질이 좋았기 때문이죠.” (사례4)

“기업소 형식상 계획을 해야 합니다. 1년 연간계획이 있고, 1달에 바칠 돈이 액수

159) 최대석 외, 앞의 책, p.46, p.68, p.75, p.76, p.85.

가 국정가격으로 150만원이었습니다. 현물 계획은 못해도 액상계획을 합니다. 8.3과제를 해서 현금 3만원이면 2-3원 데서 은행에 입금시키면, 통계 자료를 내서 돈을 입금시키면, 돈이기 때문에 통계부하고 해서 지표로 해서 만듭니다... **못 벌어요면 법을 개입시킵니다. 최소한 단련대를 보냅니다. 8.3과제를 못하면 출근 안한 걸로 합니다.** 초급당위원회 안전위원회, 당비서, 보위지도원, 보안원, 부비서 네 명이 참가해서 월간 국가 안전회의서, 사회질서 경제질서 등 문제에 대한 처벌 대책을 토의합니다. 당비서 주관하에 1달에 한번 조직합니다. 무직한거나 같으니까 단련대 1달 넣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례5)

“백성을 위한다 어쩌다 해도 우리 남한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한국 실정을 잘 압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와) 전화할 때면 내려오라고 하니까. 이 땅(북한)에서는 **매 똑같은 거 같아서 애들 크기 전에 남한으로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법(불법생활) 해야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걸려서 교화소가** 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잘살려면 비법밖에 없습니다...** 실지 국가에서 하는 사람(공식 업무 담당자)들은 소토지를 못하므로, 강냉이밥도 못먹고 바쁘게 삽니다. (주민의) 절반은 여섯 달 동안은 죽만 먹고 삽니다.” (사례1)

“아버지 직업이 있다고 해서 시집도 잘 사는 집에 갔습니다. 내가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돼지를 잡았거든요. **백정질하면서 아이를 낳기 며칠 전까지도 몇 톤 되는 콩에서 기름을 짜는 일도 하면서 모았던 750만원을 2009년도 화폐개혁 당시에 모두 날렸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모았던 돈이 하루 순간에 물이 되는 걸 겪어 보니, **법을 위반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두 살 어린 남동생은 청진, 라진에서 오토바이를 가져다가 은덕에서 팔았습니다. 오토바이 최저가가 중국돈으로 2천8백위안, 7천5백위안 정도 하는데, 북한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탑니다. 원래는 국가 일을 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돈 있는 농촌사람들은 비싼 대가(1,500위안, 당위원회 면허증)를 주고 비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장마당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니다... **주민들은 중국산 태양열 충전기를 사다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변전기도 필요한데 모두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집들도 많아요.**” (사례3)

“포전담당제는 작년(2014년) 부터 실시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경작도 잘 안되고 계획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토지 경작에는 관심을 두더라도 포전담당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12)

“작년도(2014년)에 졸업해서 작년 11월부터 출근하면서 군병원 자체로 1주일에 3-4일 노동동원을 나갔습니다. 눈만 오면 자전거 타고 100리길을 가서 눈을 치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산 몇 정보씩 맡아서 약초, 산사 같은 것을 심고, 약초나무를 심는

데, 이것도 형식상으로만 합니다. 12개 리(里)에서 세 명씩 나무를 심으로 갑니다. 약초나 약초나무를 거기에 있는 소토지 밭에다가 삭 심는다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토지에 심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과 싸움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동원해서 (강제노동을) 한다 말입니다. 노동동원을 나가게 되면, 강제노동으로 갑니다. 보수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11)

한편, 이러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시장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이 다른 지역의 시장과 연결되어 상품유통이 활발해 지고, 심지어 돈으로 형벌을 면하거나, 불법행위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내용의 증언을 통하여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일반화된 신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주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던 북한 당국의 반(反)시장적 정책은 북한 주민의 북한 당국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조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의 1순위로 최고지도자를 꼽고 있었으며, 당지도부와 내각과 같은 북한 당국 전반을 지목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나 관리자를 지목한 경우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 1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전체
2014년	명	3	5	11	18	1	111	149
	%	2.0	3.4	7.4	12.1	0.7	74.5	100.0
2015년	명	3	3	10	22	4	102	144
	%	2.1	2.1	6.9	15.3	2.8	70.8	100.0
전체	명	6	8	21	40	5	213	293
	%	2.0	2.7	7.2	13.7	1.7	72.7	100.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반(反)시장적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일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적 의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심층면담 결과, 주민들 사이뿐 만 아니라, 보위지도원과 같은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불만이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증언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에서) 배급이라고 가을에는 이삭강냉이 250키로, 보통 두 달에 한번 입쌀 3-4키로를 줍니다. 내가 있었던 곳에서는 자체로 벌어서 삽니다. 모든 집에서 돼지를 2-3마리씩 키워서 판 다음 강냉이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잘 살아서 알 강냉이 밥을 먹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형편없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사례4)

“노동자가 일하게 되면 마땅히 생활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소유니까 생활비와 식량을 보장받아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무보수 노동, 공짜와 평균주의에 대하여라고 하지만 1전 한푼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군부에도 한 그람도 없어요. 없다니니까. 생계비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없거든요.” (사례5)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제 생각인데, 세 부담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아 졌습니다.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물놀이장 등. 과학자 거리 등. 각도 보안서 등 지원하라 하거든요. 이게 다 인민들한테 다 분파되서 돈을 거둬드리거든요.. 인민들한테 쌀 한 포대라도 더 주겠다. 마식령 스키장 같은 거 만들어보아야 거기 갈 꿈도 못 꾸거든요. 돈으로 마대 싸가지고 내고, 인민군대 지원한다고 내고, 이게 무슨 거기가 달려로 몇 백 달러를 들여야 간다고 하는데. 평백성은 가지도 못하는데. 10% 정도는 끼니도 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례6)

“많이 느낀 것이 기술 발전도 없고, 나를 보면, 사회가 암흑이고, 더러운 사회라고 인정하는게 노동에 대한 보수도 없고, 무궁무진한 대중의 힘을 자기의 개인적 사치 향락에 쓰는자들이 넘쳐나고, 간부들은 대중을 뜯어 먹길 좋아하고, 평사람들 생활을 보면, 병 걸려도 돈 없으면 죽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이 국가에서 내리는 것이 많아요. 삼중 오중 육중으로 착취해 갑니다... 월급이 북한돈 3,200원인데 1년에 한두 달 정도 2000원 정도 받았습시다. 강냉이 쌀 한 키로 값 정도인데. 처가 의류를 팔면서 돈을 벌었어요.” (사례7)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는 정치가 더러운 줄은 알면서도 형제 지간에도 그런 말을 못했는데, 우리 회령은 마음이 맞다 싶으면 김정은이 이야기를 다 한단 말입니다. 요새는 말 반동은 하나도 일 없습니다. 보위지도원들도 다 알고, 지들도 수근 수근 거립니다.” (사례1)

“북한 사람들은 수 십 년 동안 인권 박해를 당해 왔으니, 인권 이야기하는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북한 사람들도 깨우쳐서 왜 이 사람(김정은)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군사복무가 나한테 뭐가 좋은가”,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건가”. 사회적으로 산다는 것이 좋은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잡혀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끝이다.” 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믿는 다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례3)

한편, 이러한 현상을 주민 일반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지만, 북한 당국이 부당한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주민의 집단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 내재화되어 있는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는 일정한 촉발요인에 따라 사회적 행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문화개방이 탈북 유동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사적 공간 증대와 지리적 이동의 증가, 비판적 정치의식의 상승,¹⁶⁰⁾ 자본주의 경제체제 선호 등의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⁶¹⁾ 또한, 최근 주민유동성 증대와 정치의식 약화로 개인의 자유가 진전되고 있지만, 자유화 진전이 국가적 사회통제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적 활동과 의식의 공간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⁶²⁾ 다만, 국가적 통제 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가 자유주의적 사고로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관계적 의식(빈부격차, 관료부패)

1) 면담기록 조사

시장화의 진전으로 장사로 자본을 축적한 ‘돈주’가 증가하는 등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계층적 구조도 형성되고, 그 관계도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¹⁶³⁾ 또한, 이러한 계층적 구조 하에서 시장관리자, 보안원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하위 관료를 비롯한 지방 행정 관료들에 대한 뇌물수수도 일상화되고 있었다.¹⁶⁴⁾ 더 나아가 시장이 관료들의 기생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160)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에 대한 평가는 62.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병로, “주민의 유동성·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110.

161) 김병로, 위의 글, pp.107-112.

162) 김병로, 위의 글, pp.111-112.

163) 이교덕 외, 앞의 책, p.68;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서울: 한국정치학회, 2009), p.165; 조정아 외, 앞의 책, p.252.

주민들과의 공생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먼저 시장에 참여하였던 주민들과 나중에 시장에 참여하였던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료와 주민간의 공생적 유착관계가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며, 같은 주민 간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환언하면, 관료와 유착관계가 없는 주민들은 철저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에게 관료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관료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였던 주민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⁵⁾

더 나아가 관료들이 이러한 공생적 유착관계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시장 참여자로 장사를 하는 상황에서 시장화의 영향은 더 이상 일반주민의 생활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시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상행위가 일상화되고, 빈부격차가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¹⁶⁶⁾ 최근 실시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상인과 관료간의 결탁현상도 일상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료와 주민 간에 공생적 유착관계 또한 계층적으로 구조화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관료와 유착관계를 가진 주민들은 행정단속과 노력동원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로 북한 사회 내부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¹⁶⁷⁾

164) 이교덕 외, 앞의 책, p.82, p.87; 최대석 외, 앞의 책, p.40, p.52, p.62, p.87, p.88; 『좋은벗들』,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오늘의 북한소식』 263호 (2009.1월); 김수암·김국산·김영운·임순희·박영자·정은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KINU 연구총서 11-06(서울: 통일연구원, 2011), p.190.

165) 김수암 외, 앞의 책, p.192, p.170, p.208; 최대석 외, 앞의 책, p.69, p.74, p.82, p.87, p.89; 조정아 외, 앞의 책, p.281.

166) 북한의 상대적 빈곤율은 29.4%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의 14.4%(2014년 기준)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또한, 북한의 소득 5분위 배율은 45로 추정되며, 이는 남한의 9배 수준으로 북한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장용석, 앞의 글, p.63.

167) 장용석(2015)은 북한 사회에서 소득에 따른 계층분화가 사회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용석, 앞의 글, pp.63-64.

“비사그루빠가 내려오면 도부터 해서 문건을 깨끗하게 없던 걸로 해치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루빠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검열 내려오더라도 보안서장이 두툼하게 챙겨주면, 죽은 것도 산 걸로 만들 수 있고, 그럼 끝나거든요. 당일군, 보위부, 검찰소, 보안서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사람도 옆에 챙기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든든하게 챙겨만 주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 문건은 없어집니다. 한번 회의를 가면 1달에 한번, 관리국 당위원회, 도당 군사위원회에 참가합니다. 우리 기업소가 군수를 갖고 있어서요. 갈 때, 응당히 도덕으로 챙겨줘야 합니다. 책임일꾼한테 책임비서한테 1달에 2-3백달러, 조직부장, 부부장은 대놓고 돈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북한돈 50만원 씩, 10만원씩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례5)

“한 달에 우리 가족에 한 달에 중국돈 5-6백원.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개인적인 매매거래는 수술 1건 당 받습니다. 비법적으로 받습니다. 감사하다고 받는 겁니다. 의사생활로 들어 온 수입이 한 달에 중국돈 300원 정도입니다. 왕진하러 많이 다니고, 개인적으로 수술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수술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돈 벌이도 되고, 인민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입원등록 등이 복잡하니까. 약품은 개인이 장마당에서 삽니다. 준비하라고 약을 주면, 환자가 장마당에서 구해서 가져옵니다. 장마당에서 약을 팔았는데, 개인 약방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합니다. 규정은 약을 팔려면 의사야만 하고, 권력 있으면 돈 고이면 됩니다.” (사례7)

“무단하고, 20일 무단 하면 단련대 가는데, 보름정도 무단하면 관찰고, 5일 정도 집안 일 하고, 또 나가고, 초급 당비서, 생산지도원, 지배인은 담배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담배를 가지고, 한 막대기 다들 받은 거를 모아서 다시 팔아 먹습니다... 10일 쉬기로 하고 담배 몇 막대기 주고.” (사례9)

“의사들 월급이 3,300원(북한돈) 밖에 안 되서 와이프가 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무산광산에서 나오는 기름을 팔았습니다. 산꼭대기(무산광산)에서 운수들이 한키로 2천원에 파는 걸 사서, 5천원에 파는 식으로 해서 돈을 벌니다. 우리집에서 기름을 받아서 청진에 내보냈습니다. (기름을 파는 것)을 걸릴 때 마다 보안원에게 돈을 고이면 됩니다. 우리집이 기름장사한다는 것을 아니깐, 대위 영감들이 와서 손님이 오니깐 돈 좀 달라고 합니다. 군관들이 말하면 해줘야 합니다.” (사례11)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15% 정도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경우 돈을 가져다 쓰던 돈 선이 있었습니다. 사채투자 업체들은 8% 정도의 이자를 요구합니다. 여기 자금은 주로 보위부, 군사동원부의 부장급이나 과장급, 사단 군부대의 고위 간부급, 도검찰소 간부들의 돈입니다. 뇌물로 받은 돈이 쌓이는데 간부들이 못 푸니까, 능력자(사채투자 업체)들에 주고 6%를 이자를 챙깁니다.”

니다.” (사례2)

“북한돈으로 3만원씩. 뇌물 같은 거는 이런 담당 보안원들이나 수사과 보안원들이 예를 들어, 한번 수사과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담배 한 막대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스파이를 붙여 놓는 거예요. 이상한 상품을 주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받은 게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용서해달라고 해서 돈을 찢러 주는 거예요.” (사례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5% 정도가 다소간의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¹⁶⁸⁾ 단속, 뇌물제공의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4-4>와 같다. 일거리 종사 시에 제기되는 1순위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결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간 누적 결과치는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기에 근접할수록 단속·뇌물 문제가 우선적인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4-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구분		사업자금마련	단속·뇌물
2012	명	47	10
	%	47.5	10.1
2013	명	62	2
	%	52.1	1.7
2014	명	32	38
	%	26.0	30.9
2015	명	19	67
	%	15.0	52.8
전체	명	160	117
	%	34.2	25.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한편, 북한 당국이 시장기능과 연계하여 재정적 수입을 확충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시장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해 오던 ‘돈주’의 층위 분화뿐만 아니라 자본의 축적 방식도 다양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68) 장용석, 앞의 글, p.62.

즉,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은 기업소와 같은 공적 기관과 결탁함으로써 공생적 유착관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소의 재정상의 문제를 기업소 설비 매각이나, ‘8.3노동’ 형태를 빌어 소속 직원의 장사로 해결하는 등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등의 증언도 확인되었다.

“자전거를 장마당에서 못 팔아요. 원래는. 상점에서 팔게 꿈 했기 때문에 장마당에 자전거 매대는 없습니다. 자전거 장사는 온갖 비행이 제일 많은 것이. 비법으로 움직이니까, 도둑질 대상이고, 강도질도 자전거로 달아나고. 온갖 비행이 자전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국가적으로 하지 말라는 장사인데, 법관들이 눈을 감아 주는 거죠. 보안서에도 과제가 떨어지거든요. 돈을 바쳐라. 이런 과제가 떨어지거든요. 장마당에서 자전거 장사를 하면 북한에서는 잘산다고 하거든요. 자전거 매대 반장한테 와서 얼마씩 걸어 내라고 합니다. 안 해주면 매대 다 철수하라고 탄압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전거 매대 거기매 사람이 열 몇 명이 있거든요. 장마당 규칙에는 장세라는 걸 걸거든요. 우리는 매일 내는 걸 싫어서 한 사람당 매달 냅습니다.” (사례6)

“잡은 물고기는 소량은 장마당에 낼 수도 있습니다. 포구에는 잡은 물고기를 전국 각처로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항 당시 내 돈으로 기름 낼 수도 있지만, 먼저 연유장사꾼이 연유를 넣어준 후에 조업 후에 잡은 물고기로 계산해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포구 마다 텃새라는 게 있습니다. 포구 회사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서 특징인이 포구를 산겁니다. 포구에서 뛰는 배들의 연유를 보장하면서 생산물을 다 가져갑니다. 포구주인은 관리권이 있는 기업소에 얼마를 주고 포구를 독점하는 겁니다. (다른 포구의) 장사꾼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똑딱이(다른 포구로 물건을 떼어 주고 받는 중개업 형태) 장사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돈이 나옵니다(은행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융통). 회사에 가서 물고기를 넣어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1년에 1,000달러를 소속 기업에 냅습니다. 수산 작업반에 종사하는 선장들은 정직원으로 1년에 얼마씩 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소는 (연간) 순금 1킬로를 (상위 계획단위에) 냅니다.” (사례2)

“기업소에 설비를 팔아라. 정 돈이 없으면. 팔아서 폐기한 걸로 문건 처리하고. 자동차 4대 트럭 2대, 자동차는 써비를 보내거든요. 개인 짐을 청진까지 나르면, 100달러를 순이익으로 받아와라. 그러고 나서 너는 장사해라. 꼬박 꼬박 바치거든요. 들어온 자금은 당 비서용... 전혀. 종업원들 노임 못 주니까, 너 장사하고, 얼마씩 바쳐라. 형식상 출근이죠. 달아나지만 않으면 되고, 있나 없나 보는 정도이지.” (사례5)

“2015년 7월에 진행되었던 건인데, 물에 균이 들어와서 **물 공급하는 시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세대 당 10만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 당 못 먹어도 강냉이 100키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10-20만원돈이 되는 것이니 비싼거죠. **이걸 내지 않으면 장마당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10만원을 내라고 하니 다들 바빴습니다. 기르던 짐승을 팔거나, 별난 게 다 있었습니다. 강원도 풀밭 조성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풀씨 사는데 오천원씩 냈고, 외화자금 만드는데 개가죽을 내야 하는데, 돈으로 내면 1만 5천원씩 내야 했습니다.” (사례4)

4. 전통적 가치관

1) 면담기록 조사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여성들이 시장생활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이 장사하는데 집중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소위 ‘부화사건’과 같은 불륜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있는 일부 남성들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였던 여성에 의존하고 있었다. 면담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여성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서 더 나아가 가정 내에 여성의 주도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전시기에 불륜과 같은 사회적 문제 이외에도 여성들의 만혼(晩婚), 연하 남성과의 결혼, 여아 선호, 남성의 가사(家事)행위, 잦은 이혼 현상과 같은 전통적 문화의 틀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¹⁶⁹⁾

2) 평가

면담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향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가정 내 주도적 지위를 가진데 이어, 결혼, 남녀관계 등에 관한 전통적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는 경제력이 여성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전통적 문화와 가치관도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내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의 비중

169) 김수암 외, 앞의 책, p.190; 최대석 외, 앞의 책, p.91, p.92, p.94.

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⁰⁾

한편, 종래 여성 중심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남성 직장인과 학생층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별과, 연령 등의 구분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전통적 가치관이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남성과 학생층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니**까 자신이 벌어서 (스마트폰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부터 여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앞이 보여야 (남자에) 투자를 합니다.** 대학에서 군교도 생활 6개월을 하고 나서야 여자를 사릅니다. **이때 여자가 남자에게 약혼 기념으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진시 웬만한 사람들은 한 80% 정도는 손전화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사용합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고, 처음 나온 것이 2010년경인데, 대만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격이 4~500 달러 정도 됩니다. **대학생의 90%는 스마트폰을 씁니다. 대학 다니려면 일단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 간에) 자존심 경쟁을 하니,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스마트폰을 삽니다.**” (사례4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면담기록에서 확인되는 위와 같은 현상들은 시장화가 농촌 중심의 단조로운 사회형태를 시장 중심으로 다양화된 사회로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북한 당국이 우려해 왔던 ‘자본주의적 요소’가 적어도 시장에서 그 주변부, 그리고 주민생활의 확대된 생활 범위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의사결정에서 i)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29.7%,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는 경우 19.6%,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28.3%,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22.5%로 나타났다.; 정은미, “주민생활과 정보화,”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78.

제3절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의 동인(動因) : 시장경험의 축적, 그리고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 전개의 영향

1. 서설

북한의 주민의식의 변화를 기존연구의 탈북자 면담기록을 중심으로 첫째, 시장에 대한 인식, 둘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자유주의 셋째, 빈부격차, 관료부패와 같은 관계적 의식으로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지, 다른 변화는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8월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검증하는 한편, 다른 의미 있는 의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시장경험은 ‘자본주의적 요소’에 노출, 적응,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로 전환하는데 기본적인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 당국이 시장을 활용하거나, 억제하는 통치 과정에서 정책과 법제가 주민의 시장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던 이 같은 추론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 시장경험의 축적과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전개가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시장경험의 축적, 그리고 시장 정책, 법제 전개의 영향

1)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연구의 탈북자 면담기록에 나타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와 크게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5년도 설문조사 결과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화에 따라 주민들의 시장 경험의 축적, 그리고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화 전개에 따라 비공식 영역을 공식화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전환되었다.

시장에서 장사를 통하여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북한 주민의 시장 인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데 기본적인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시장화 전개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진행하였던 정책은 1990년대까지 ‘목인’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사회주의 그루빠’ 단속 강화, 사회주

의 상업체계의 법제화(상업법 제정)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자력갱생을 위한 필요공간으로 인식하는데 북한 당국의 ‘묵인’ 정책이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된 셈이다. 이후 북한 당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 판단으로 2003년 종합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김정일의 “시장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내각지시 제24호에 등장하고 있는 점, 시장의 조직적 관리, 시설의 현대화 등은 시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의식 변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암거래가 성행하던 비공식적·불법적인 공간에서 공식적인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일반화된 신념의 변화

기존연구에 나타난 면담기록 이외에 본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으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한층 만연되고 있고 있다는 것과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이 일부 관료 사이에서도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는 기존연구의 면담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본 심층면담에서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적인 표현들이 다수 확인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 지속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북한 주민에게 실망과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에는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관료까지도 이러한 불만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증언은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가 이러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사회전반에 일반화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북한 당국이 주민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집단주의적이고, 개인의 희생과 충성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민들은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 장사에 집착하게 되고, ‘장사’의 속성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주민들의 일반적인 신념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¹⁷¹⁾ 환언하면, 북한 주민의 시장경험 축적에 따라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는 북한의 시장 정책과 법제 적용의 실패 과정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일반화된 신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북한이 반(反)시장적 정책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한

171) Smelser(1962)는 ‘집합행동이론’에서 ‘구조적 압력(structural strain)’ 이후 ‘일반화된 신념(generalized belief)’ 단계로 진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 불만이 구조적 압력이 되어, 일반 주민들의 국가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다. 특히, 앞서 소개하였던 증언 가운데,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법을 위반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증언(사례3)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에게 반(反)시장적 정책은 불법을 조장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적 의식 등의 변화

기존연구에 나타난 면담기록 이외에 본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으로 상인과 관료간의 결탁현상이 구조화되고, 사회적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 진전에 따라 관료부패가 만연되고, 주민 가운데에서도 일정한 자본을 갖고 있는 계층이 형성된 이후, 그러한 구조가 다원화, 다층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 당국의 시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즉, 북한 당국이 시장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시장을 적극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시장을 공식 재정수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¹⁷²⁾ 그 밖에도 기관, 기업소들도 재정상의 문제를 시장기능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이러한 시장 중심으로 확산되는 계층구조의 심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기존연구의 면담기록과 심층면담에 따른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시장화에 따라 빈부, 권력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의 계층적 구조화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적 권리나 이익 중시와 같은 개인 중심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그 주변부와 전통적 가치관 등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 영역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시장화 진전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의 이면에는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적극적 시장 활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반(反)시장적 정책을 선택할 때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내면화되고 있었던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불만을 사회적 행위로 표출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속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경험의 폭과 깊이의 확대, 그리고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진전이라는 중간경로를 거쳐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그러한 의식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시장화 진전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172) 북한의 국가예산수입법 제62조에서 “공민은 시장 같은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데 따라 수입금을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 법이 제정된 2005년 이래 지금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의 잠재적 변인(變因)으로 적어도 그 의미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 론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시장을 찾게 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주의 상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예외적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이 상품유통의 주된 경로로 재등장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주민의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가 시장을 계획경제의 회복 즉, 체제유지를 위한 형식적 기능을 염두에 두는데 대하여 후자는 삶의 영위라는 실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시장화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얻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지도 관찰대상이 된다.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한 계획의 공백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본주의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시장을 통해서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시장 관련 정책과 법제의 전개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평행적 또는 상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논의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시장 경험과 이에 따른 의식 변화가 향후 북한의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시장 경험이 축적되고, 이에 따른 학습효과가 주민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시장 정책과 법제의 수범자로서 주민들은 이러한 시장제도의 변화에 따른 의식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을 담지하고 있는 시장 정책 및 법제의 전개와 북한 주민의 의식의 변화를 주요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 당국의 통치행위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는 당의 정책과 이를 구현하는 법제도라는 중간경로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는 추론에 따라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관련 법제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러한 시장 정책과 법제의 영향 이외에도 시장 경험이 가져다주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기존연구의 면담기록을 조사하고,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구조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중점 대상 영역인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본적인 인식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주의 상업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의 교과서류와 사전류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시장은 계획에 의한 상품유통망인 국영상점 등이 완비되는 등 사회주의 완성 단계에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시장은 국영상업망의 부족을 보충하는 일정한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오고 있다. 즉,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 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적극 활용함에 있어서 국가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북한 당국이 마련한 상업법제와 시장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된 현행 상업법이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전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과 상업성 지시 등에서 시장 통제를 통한 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확인되었다. 상업법의 시장 관련 규정에 대하여 그 하위법에서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하위법 규정은 ‘내각의 통제품목 승인’, ‘시, 군인민위원회의 한도가격 설정’, 시, 군인민위원회의 개인 상인 등록’ 과 같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정책과 법제의 의미가 미미하다면, 본 연구에서 시장 정책과 법제를 주요 관찰대상으로 하는 의미도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통치기제로서 시장 정책과 법제를 관찰하는 배경적 검토도 추가하였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이 법을 제도화의 기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도의 강한 정치성, 당 정책의 수단성을 강조함으로써 법제도의 정책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책과 법제는 북한의 통치기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시장 정책과 법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시장 정책과 법제의 변천 과정은 주민의 시장경험 증가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장 성장기(1970년-1990년대)’, ‘시장 확산기(2000년-2004년)’, ‘시장 억제기(2005년-2011년)’, ‘제2 시장 확산기(2012년-현재)’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시기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성장기(1970년-1990년대)에 북한 당국은 암거래 문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1992년부터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결성하여 단속하는 등의 강경한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 시기에 기존의 사회주의 상업에 관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하지만, 당시 주민의 반발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과 대기근 현상으로

이러한 정책은 지속될 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문제, 김일성 사후 사회혼란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대한 정책은 다시 ‘목인’을 선택하였고, 결국 제정 상업법의 규정들은 당시 시장화 현상의 확산과 함께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 확산기(2000년-2004년)에 북한 당국은 그동안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붕괴현상 즉, 농민시장의 암시장화와 그에 따른 문제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의 입장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한 시기로 추정된다. 결국, 2002년 7.1조치에 이어 주민들의 반발 등과 같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확인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03년 5월 종합시장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5월 내각지시 제24호에 따라 내각명령 제27호로 제정된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그리고 각 지방에 하달된 상업성 지시 제48호를 통하여 종합시장제도의 전모가 확인되었다. 또한, 2004년 6월 개정 상업법은 이들 규정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셋째, 시장 억제기(2005년-2011년)에 북한 당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경제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수용적 입장과 불수용적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화폐개혁을 정점으로 주민의 저항과 당시 김정은의 후계 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시장에 대한 수용적 입장으로 환원되었다. 2010년 상업법 개정으로 시장을 ‘보조적 공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된 공간이 여전히 국영 상업망인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보충적형태’에 지나지 않았던 농민시장에서 더 나아가 국영 상업망을 활성화하는 제한적이지만 적극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정책변화가 경제난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기초한 것이지만, 시장경험에 따른 주민의 의식도 그 변화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제2 시장 확산기(2012년-현재)에는 시장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당국이 보였던 정책적 방기와 같은 ‘목인’이라기보다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적인 ‘목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주민의식의 변화를 기존연구의 탈북자 면담기록을 중심으로 첫째, 시장에 대한 인식, 둘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자유주의 셋째, 빈부격차, 관료부패와 같은 관계적 의식으로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장화에 따라 주민들의 시장 경험의 축적, 그리고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법제화 전개에 따라 비공식 영역을 공식화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전환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실시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한층 만연되고 있고 있다는 것과 둘째,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이 일부 관료 사이에서도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셋째 상인과 관료간의 결탁현상이 구조화되고, 사회적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장화 진전에 따라 보다 심화되고, 확대된 형태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북한 사회에 일반화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북한에 지속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북한 주민에게 실망과 불만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 시장화 진전에 따라 관료부패가 만연되고, 주민 가운데에서도 일정한 자본을 갖고 있는 계층이 형성된 이후, 그러한 구조가 다원화, 다층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 당국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의 재정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조화되고 있다.

기존연구의 면담기록과 심층면담에 따른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시장화에 따라 빈부, 권력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의 계층적 구조화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적 권리나 이익 중시와 같은 개인 중심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그 주변부와 주민의 생활 영역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북한의 시장 정책과 법제의 변천 과정, 그리고 시장 경험 축적에 따라 주민의 의식변화를 검토하였다. 시장 경험의 축적은 ‘장사’의 속성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적 사고를 주민들에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음은 기존연구 자료와 증언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시장 정책과 제도는 일시적인 부침현상이 있었지만, 당원들도 시장 활동에 참가하는 등 그만큼 사회저변의 시장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 당국이 보였던 시장에 대한 묵인 정책은 주민들의 시장 경험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현상은 보다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 이후 반(反)시장적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는 그 이전 시기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만연, 빈부격차, 관료부패에 대한 관계적 의식변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화 진전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의 이면에는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적극적 시장 활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반(反)시장적 정책을 선택할 때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내면화되고 있었던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불만을 사회적 행위로 표출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속단

을 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그러한 의식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시장화 진전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북한 사회의 잠재적 변인(變因)으로 적어도 그 의미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시장화 전개는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재정수입을 위한 북한 당국의 시장 활용이라는 현실이 향후 북한의 시장 정책과 제도 변화에 잠재 변수가 된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적어도 2008년 화폐개혁과 같은 반(反)시장적 조치를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을 제공한다.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라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과 북한 당국의 시장 활용이라는 위로부터의 움직임이 상호 작용하여 그동안의 시장 인식에 대한 제도적 수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제도의 수립과 적용은 사회변화와 밀접하게 상관된 하나의 사회적 절차에 불과하며, 제도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사회변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시장화에서 제도적 수정이나 개혁 수준의 변화는 다른 사회적 조건의 변화로 확산되는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가. 단행본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_____, 『백과전서(3)』.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_____.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년)』, 2012.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7.
_____. 『조선대백과사전(1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_____. 『조선대백과사전(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_____. 『광명백과사전 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1993.
- 서창섭. 『법건설경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 사회건설에 이룩한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_____. 『주체의 법리론』.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_____.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법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학 소사전』. 조선 로동당 출판, 1960.
_____. 『정치 경제학 교과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정치 경제학 참고 자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_____. 『주체정치경제학독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조선중앙통신사. 『1950년판 조선 중앙 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 _____.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발행연도 누락.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54-1955년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54.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58년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58.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60)』.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0.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61년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2.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62년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2.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63년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3.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64년)』.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4.
- _____. 『조선 중앙 년감 (1965년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5.
- _____. 『조선중앙년감 (1966-1967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 _____. 『조선중앙년감 (1968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발행연도 누락.
- _____. 『조선중앙년감 (1969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9.
- 최중극.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나. 논문

- 강천복. “사회주의법은 선군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며 위력한 실현수단,” 『정치법률연구』.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 김은경.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어길수 없는 공민적의무,” 『정치법률연구』.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 리원경.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 『경제연구』. 2009년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 장성철, “당정책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검찰, 재판기관의 중요과업,” 『정치법률연구』.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 진유현. “사회주의법건설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다. 기타

『로동신문』. 1962년 11월 20일, 1969년 3월 4일, 1969년 6월 1일, 1969년 8월 12일, 1969년 11월 24일, 1969년 12월 23일, 1973년 7월 8일, 1974년 3월 23일, 1976년 6월 1일, 1977년 3월 21일, 1977년 12월 18일, 1978년 5월 25일, 1978년 7월 9일, 1982년 2월 8일, 1983년 4월 7일, 1983년 11월 10일, 1984년 12월 5일, 1990년 11월 29일, 1991년 9월 15일, 1994년 6월 27일, 1994년 12월 10일, 1995년 12월 21일, 1997년 12월 21일, 1998년 3월 1일, 2001년 11월 6일, 2001년 11월 28일, 2002년 11월 28일, 2002년 2월 20일, 2007년 8월 9일. 2008년 1월 1일.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2003.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김수암·김국산·김영윤·임순화·박영자·정은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KINU 연구총서 11-06.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94-2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08.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_____.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이관세·김갑식·박희진·홍재형.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이교덕·임순화·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KINU 연구총서 07-06.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조정아·임순화·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

- 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KINU 연구총서 10-12.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최대석·박영자·박희진.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및 주민의식 변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0.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5.
- _____.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2006.
- _____.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4.

나. 논문

-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보』. 제45집 제5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2011.
- 권요윤·정성훈.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회과학연구』. 28(1). 부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 권영경.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3권 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9.
- _____.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4호. 서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3.
- 김병로. “주민의 유동성·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김영희·김병욱.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창희.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 경제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4권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0.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9), p.165.
- 박형중.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 –2009년의 북한을 바라보며-.” 『Online Series CO 08-72』.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양문수. “북한 시장화 논의의 지형과 담론.” 『북한연구학회 2014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4.
- _____.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_____.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 『북한연구학 회보』. 18권 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4.
- _____. “통계를 통한 북한경제의 이해와 북한의 시장경제.” 『북한통계 설명자료』. 대전: 통계청, 2014.10.
- _____.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15(1). 서울: 북한 대학원대학교, 2012.
- _____. “북한 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 이갑준. “김정은의 만경대혁명학원 현지지도와 후계체제 공고화.” 『북한학보』. 제 39집 1호. 서울: 북한학회, 2014.
- 이 석.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관찰, 분석, 그리고 해석.” 『KDI 북한경제리 뷰』. 2014년 7월.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_____. “총괄: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의 동향 개관 및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 2016년 7월.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이정철. “북한 가격정책의 내용 분석 및 향후 변화 경로 예측,” 통일부 정책연구, 2007.
- 이종규. “시장 및 비공식부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 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 서울: 북한연구 학회, 2014.
- 장용석. “시장화와 소득·세대·지역 분화.”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정은미. “주민생활과 정보화.”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54(1)(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 _____.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9.
- 정정길·전창곤.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분석.” 『농촌경제』. 제23권 제2호. 서울: 농 촌경제연구원, 2000.
- 정형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대외경

- 제정책연구원, 2012.
- 조명철.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정세와 정책』. 경기: 세종연구소, 2010.
- 차동관·김대규.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경주전문대학논문집』. 제8집. 경주: 경주전문대학, 1994.
- 한재현. “북한의 시장화와 통치-‘국가 대 시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사회와 역사』. 제105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15.

다. 기타

- 『동아일보』. “북 시장 마비... 단속원, 주민 곳곳 충돌. 화폐개혁 후 극심한 혼란 (2010.2.3).”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데일리NK』. “북, 화폐개혁 후 평양 쌀값 ‘59’배로 올라(2010.3.15).”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개인 제조업 성행... ‘국영공장까지 임대’(2015.10.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학교서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2015.11.11).”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시장서 ‘국정가격 얼마요’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 (2015.11.13).”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대학생, 통화도 안하면서 핸드폰 ‘꼭’ 갖고 다니는 이유 (2015.11.1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보안원, 북한돈 달러 환차익으로 막대한 돈 벌어(2015.11.24).”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올해 왕가품 수해에도 개인 소토지 빼기받은 풍년(2015.11.24).”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주민, 겨울철 딸기 오이 하우스 재배로 수천달러 수익 (2015.11.30).”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외화벌이 회사, 무역와크(허가증) 장사로 돈방석(2015.12.8).”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김정은 극찬한 ‘관광상점’ 상품 질 떨어져 파리날려(2015.12.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대학생, 빵이 든 주머니 들고 장마당 가는 이유(2015.12.29).”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로이터 통신』. “북, 농업개혁 추진... 곡물 시장거래 허용(2012.9.4).” 『월간북한동향』. 제6권 제5호 2012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2.
- 『미국의소리』. “휴먼라이즈워치, 북한, 개인 상업활동 극도로 탄압(2015.4.3).”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2호 2015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장마당에 ‘주택 브로커... 이색 자영업자 속출(2015.11.28).”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산케이신문』. “북한, 신경제정책 10월 시행 전망(2012.7.22).” 『월간북한동향』. 제6권 제4호 2012년 7, 8월. 서울: 통일부, 2012.
- 『세계일보』. “‘시장경제 확대’ 북 5.30조치 확인. 『조선신보』 “김정은 작년 5월 담화 과업 관철 위한 대책 집행” 밝혀,” 2015.1.9.
- 『열린북한방송』. “열린북한통신 제13호(계재일 누락).”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 6월. 서울: 통일부, 2009.
-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2008.4.27.). 『월간북한동향』. 제2권 제2호 2008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08.
- 『월스트리트저널』. “북 최대의 평성시장 폐쇄(2009.9.19).” 『월간북한동향』 제2권 제2호 2008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08.
- 『자유아시아방송』. “전쟁·화폐개혁 우리 주민들 ‘달러 사재기.’ 2009.4.9.
- _____. “북 화폐개혁, 중소기업들 가장 큰 피해.” 2009.12.1.
- _____. “북 장성택, 화폐개혁 혼란 수습 주도(2010.2.12).”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반시장 조치 잇달아 철회... ‘뺨기발’ 분배(2010.3.22).”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쌀값 폭등세 지속... 열흘 새 50% 상승(2010.8.2).”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4호 2010년 7, 8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시장 쌀가격 추수절 맞아 대폭 하락(2010.10.3).”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주민들 세습비판 차단에 안감힘(2010.10.8.)”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장마당에 ‘3대세습 비난’ DVD 나돌아(2011.1.20.)”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1호 2011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1.
- _____. “북 환전상, 송금업까지 취급(2012.9.24.)” 『월간북한동향』. 제6권 제5호 2012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2.
- _____.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비공식 장마당도 많아(2015.10.25.)”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장마당에 가짜 UN약 범람(2015.10.28.)”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자본주의 생산방식 묵인(2015.11.2.)”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북 합법시장 400개 넘어(2015.12.24.)”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2015.12.29.)”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조선신보』. “북한, 자정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등장... 시장기능 확대(2015.1.19.)”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1호 2015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시장경제 도입은 했는데... 북한, 부작용 방지책 ‘고심’(2015.2.22.)”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1호 2015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5.
- 『좋은벗들』. “2004년 북한의 돈주.” 3호. 2006.9.21.
- _____. “12월 1일부터 45세 이하 여성 장사 금지.” 『오늘의 북한 소식』. 제97호, 2007.11.07.
- _____. “칭진시, 숨 가뻐던 1박 2일.” 『오늘의 북한 소식』. 제117호, 2008.03.26.
- _____. “종합시장 취소 소식에 주민들 불만 표시.” 254호. 2008.11.25.
- _____. “종합시장 폐지, 평양간부들 의견 분분.” 『오늘의 북한 소식』. 제255호, 2008.12.02.
- _____. “오늘의 북한소식’의 2008 북한 10대 뉴스.” 『오늘의 북한 소식』. 제259호, 2008.12.30.
- _____. “북, 종합시장 폐지 연기(2009.1.4.)”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1호

- 2009년 1,2월.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97호(2009.5.19.)”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 6월.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북, 시장서 음식판매 금지(2009.5.26.)”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3호
2009년 5, 6월.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외화 사용 금지 이후 함경도 물가 올라.” 321호. 2010.1.5.
- _____. “주요 도매시장 잇달아 폐쇄(2010.1.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물가 폭등...주민들 망연자실(2010.1.26.)”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북, 식량난 심각... 아사자발생, 급속히 전역 확산(2010.2.16.)”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다급해진 북, 시장 열고 식량거래 단속말라(2010.2.18.)” 『월간북한동
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340호.” 2010.6.14.
- _____. “북, 식량난 심각... 집단 아사 농촌까지 확산(2010.6.17.)” 『월간북한동
향』. 제4권 제3호 2010년 5, 6월. 서울: 통일부, 2010.
- 『중앙일보』. “화폐개혁 후 금지했던 북한 시장 다시 열림(2010.2.5.)” 『월간북한동
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연합』. “북 시장통제 심해져 주민불만 고조(2009.4.22.)”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북, 화폐개혁 주도 노동당 간부 경질(2010.2.4.)”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1호 2010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0.
- 『연합뉴스』. “북 학자, 화폐개혁 이후 혼란 없었다(2010.4.1.)”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탈북 여대생, 북에도 장마당 세대가 있어 희망적(2015.2.25.)” 『월간
북한동향』. 제9권 제1호 2015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한, 장마당 이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도 인기(2015.4.3.)” 『월간
북한동향』. 제9권 제2호 2015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주민, 김치 점점 덜 담가... ‘장마당 증가 영향’(2015.10.27.)” 『월간
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미 전문가, 신의주에서 최근 시장규모 빠르게 확대(2015.10.31.)” 『월

- 간북한동향』. 제9권 제5호 2015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북 학교서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2015.11.11).”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정보당국, 북 장마당 하루 100만-180만 명 이용(2015.12.27).” 『월간북한동향』. 제9권 제6호 2015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5.
-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4호 2010년 7, 8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월간북한동향』. 제4권 제5호 2010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1호 2011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11.
- _____.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2호 2011년 3, 4월. 서울: 통일부, 2011.
- _____.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3호 2011년 5, 6월. 서울: 통일부, 2011.
- _____.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5호 2011년 9, 10월. 서울: 통일부, 2011.
- _____. 『월간북한동향』. 제5권 제6호 2011년 11, 12월. 서울: 통일부, 2011.
- 『USA 투데이』, “북 주민, 자유시장 제한에 반발(2009.2.20).” 『월간북한동향』. 제3권 제1호 2009년 1, 2월. 서울: 통일부, 200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4>), 2016.2.27. 접속.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디지털아카이브
통일연구원 통일북한정보 중 북한자료 DB

부 록

1. 북한의 상업체제 형성기의 상업 관련 규정 발췌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연감 1950]

20개정장 (p.18)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8.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업 농업 운수업 및 상업등을 발전시킬 것
10.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것
12.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며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쟁할것
13. 단일하고도 공정한 조세제를 제정하며 진보적 소득세제를 실시할것

개인소유권을보호하며 산업및 상업활동에있어서의개인의창발성을발휘시키기위한 대책에관한 결정서(p.24)

1946년 10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개인소유인 공장 제조소등의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가 및 상업가들의 산업 및 상업발전에 대한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아래와같이 결정한다.

1. 조선인민의 개인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의 몰수는 특별한 경우에 인민재판의 결정 또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사회단체 및 지방행정기관(인민위원회 및 보안서)의 몰수한것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한다.
2. 조선공민들의 개인소유인 공장 제조소 기업소 탄광 창고 회사 상업기관등은 국유화

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결정에 의하여 이미 조선공민의 개인소유이었던 기업소등을 불법적으로 몰수한 사건을 조사하여 그 모든 기업소등을 전소유자에게 반환할것을 각도인민위원회에 위임한다.

3. 조선인 및 일본인이 공동투자한 회사(단 무기 군용피복 군장 체신자료 군용운수기관 및 기타 군수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회사에 한함)의 주권 소유자가 민족반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배당을 받지못하거나 또는 주주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권소유자가 그에대한 요구서를 1946년 10월 24일 이전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적당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1946년 10월 24일을 경과한 이후에는 조선인 및 일본인의 공동투자한 회사의 주권 소유자의 요구를 접수 해결하지 않는다.

4. 산업 상업 급 농림국 및 각도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의 개인자본으로서 주민들의 광범한 수요에 공헌할 제품 및 상품을 증산하기위하여 노동자 50명이하를 사용하는 공장 제조소 탄광 임업 어업 및 과거에 일본인 소유이었던것을 현재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가택 창고 급 상점 건물등을 조선공민인 산업가에게 방매(필요한 경우에 한함) 또는 임대할수있다.

5. 북조선 각 은행은 개인산업가 및 **상업가에 대하여 단기로 보통대차조건에 의하여 대급**하여야 한다.

6. 사법 및 상업국은 상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문제 해결에 관한 법령초안 및 특별재판규정초안을 작성하여 1946년 10월 25일이전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7. 저금의 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도인민위원회 및 기타 지방행정기관이 은행공작에 간섭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는것을 금지한다.

은행은 저금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한다.

8. 북조선검찰소는 본결정서의 정확한 실시를 감시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반부의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1948년계획실행총결과 :
1949년-1950년 2개년계획에관한법령 (pp.56-66)

4. 상업부문에 있어서 (p.58)

인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충족하게 공급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유통을 원만히 하며 상품유통비를 축소시키며 물가를 저하시키고 원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도록 적극노력할 것이다.

이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국영 및 소비조합상점망을 도시와 농촌에 광범히 설치하여 상품유통에있어서 국가 및 소비조합상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일것이다.

국내상품유통의 장성과 아울러 대외무역을 적극추진시킬것인바 인민경제건설에 필요한 중요자재 및 기계류와 인민들에게 절실히 수요되는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더많이 수입하기위하여 증산과 절약에 의하여 다량의 물자를 수출할 것이다.

상업부문 (p.64)

1. 국영상업과 소비조합상업의 상품 총유통액을 1949년 15,995,000천원 1950년 21,189,500천원에 달하는 범위로 정하는바 그중 국영상업에 있어서는 1949년 7,225,200천원 1950년 10,451,620천원을 유통시킬 것이다.

국영상점과 식당을 1949년에는 810개소 1950년에는 1052개소로 증가시키어 1948년말에 비하여 1950년말에는 188.5%로 장성시킬것이며 소비조합상점과 식당은 1949년에 1917개소로 증가시키어 1948년말에 비하여 1950년말에 134.8%로 장성시킬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국가 및 소비조합상업을 문화적상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국영상업망 확장을 위하여 1949년에 109,805천원 1950년에는 148,000천원 총액 275,805천원의 기본건설자금이 지출될것인바 그중 1949년에 85,590천원을 국가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2. 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입총액을 1949년에 11,879,260천원 1950년에는 15,325,520천원에 달하게 함으로써 1948년 실적에 비하여 1949년 124.3%, 1950년에는 160.3%로 향상시킬것이다. 특히 대쏘무역을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쏘련과의 경제관계를 일층 확고히 할 것이다.

3. 수매사업에 있어서는 총수매고를 1948년에 비하여 1949년에는 160.8% 1950년에는 184.2%로 각각 증가시킬것이다. 그중 1948년에 비하여 직류공업원료는 1049년 127.1% 1950년 163.8% 원피는 1949년 23.5% 1950년 47.5% 엽연초는 1949년 97.1% 1950년 127.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두 봉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기장 강양욱
1949년 2월 1일 평양시

[조선중앙연감 1954-1955]

빈농민 및 령세 어민들의 경제 형편 개선 대책에 관하여
내각결정 제26호 1953년 2월 18일(p.41)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된 후 미 영제국주의 무력 침략자들의 야만적 폭격과 비 인간적 만행으로 인하여 축력과 농기구 및 어로 도구 등을 약탈과괴당하고 농가 부업 생산과 어업생산이 현저히 감소된 데로부터 일부 농 어민들의 경제적 형편은 곤란한 상태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농 어민들 특히 빈농민들과 령세 어민들의 경제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농 조건을 지어 주며 전세(?)로 인하여 파산된 경제 토대를 복구하며 생산 사업을 보장하며 물질 생활의 향상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빈농민들과 령세 어민들로 하여금 자립 자영의 생산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의 경제 토대를 구축하여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수립 실시할 것이다.
... (2) 빈농민 및 령세 어민들에게 제반 부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증가 시키도록 할 것인 바
... ㉔. 농촌의 부업 생산을 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 (ㄱ) 생산 협동 조합 중앙 련맹 위원회는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한 농촌 부업 생산 협동 경영체를 조직하고 그를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지도할 것이며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지방적 원료 원천을 옹계 리용하도록 방조를 줄

것이며 타 지방과의 원료 및 재료 교류를 앞선하여 조합 운영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할 것.

- ... (ㄴ) 소비 조합 중앙 위원회와 생산 협동 조합 중앙 연합 위원회 및 각급 인민 위원회는 농촌 및 어촌에서 생산되는 부업 생산물들이 중간 상인들의 손을 통하여 이익을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부업 생산물을 생활 필수품과 교역하는 등 그 수매사업을 옹계 조직할 것.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수산물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내각 결정 제43호 1954년 3월 11일(p.48)

1. ... (2) 소매 상업망을 통하여 수산물을 광범히 취급할 것인바 특히 직장 상점들과 상설시장 내에서 판매 활동을 강화하며 노동자, 사무원들의 주택지구 및 그들의 밀집 지대에 선어전문 판매점을 설치할 것.

법령

1945-195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하여(p.3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서기장 강량욱
1954년 4월 23일 평양시

- ... 4.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상업 발전에 있어서
... (2) 생활 필수품 생산의 장성과 쓰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로부터의 원조 및 수입에 의한 상품 증대에 상응하여 1956년에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상품 류통액을 550억원 즉 1953년에 비하여 2·3배로 (1954년 1월 1일 대비 가격에 의하여) 증가시킬 것. 공화국의 상품류통 총 범위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비중을 더욱 제고할 것.
... (4) 상품 류통에 대한 이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간에 2926개소의 상업망을 증가할 것인 바 그중 상점은 1169개소, 분매점은 1757개소를 증가할 것.

우선 1954년에 국영 상업에서 503개소의 상점, 1157개소의 소매점, 협동 단체 상업에서 210개소의 상점, 300개소의 소매점을 열것.

- (5) 규정된 배급 상품을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정확히 공급할 것이며 소요되는 품종과 적합한 질을 보장하면서 수요가 많은 상품에 대한 자유 상업을 광범히 전개할 것.

공화국의 모든 대 도시와 공업 중심지에 자유 판매 상업망을 확장 개설하며 상점들에 대하여 온갖 필수상품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할 것.

- (6) 상업 문화를 향상시킬 것이며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새로운 공업 상품과 식료품과 농산물들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 상업 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새로운 식료품과 공업 상품을 도입하며 그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평양시와 도 소재지들에 모범적 전람상점과 생산성들의 직매 상점들을 조직할 것.

- (7) 사회 급양을 백방으로 발전시킬 것. 3년간에 사회 급양 류통액을 적어도 45%증가시킬 것. 이 목적으로 1954-1956년에 400개의 식당 및 레스토랑을 증가할 것인 바 그 중 1954년에 매개 시와 군 소재지에 최소 2개의 식당을 개업케 할 것.

- ... (9)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품 원천을 증가시키면서 국가 소매 가격을 체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며 3년간에 배급제도를 철폐하고 광범한 식료품 및 공업 생산품을 유일 국가 가격에 의하여 판매하게 될 자유 상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것.

[조선중앙연감 1959]

내각 결정 제93호 (1958년 8월 7일)

생활 필수품의 국정 소매 가격을 인하할 데 관하여 (p.112)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킬 목적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국정 소매 가격을 인하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생활 필수품의 국정 소매 가격을 1958년 8월 14일부터 별지 (생략)와 같이 인하한다.
2. 대내외 상업상은 본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각 도(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대내외 상업상과 연계 밑에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제품에 대한 소매 가격을 동시에 인하할 것이다.

3. 대내의 상업상 및 조선 소비 협동 조합 중앙련맹 리사회 리사장은 국정 소매 가격 인하와 관련하여 자체 수매품 및 리용 생산 제품 판매 가격을 동시에 조절할 것이다.
4. 재정상 및 각 도(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국정 소매 가격 인하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격차액을 해당 상업 기관 소재지 도 예산에서 보상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평양시

내각 결정 제112호 (1958년 9월 24일)
채소의생산 및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pp.113-114)

- ... 8. 채소의 공급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 (1) 대내의 상업상 및 각 도(평양시, 개성시)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중요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에게 채소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대책을 강구 실시할 것이며 채과 도매기관이 직영하는 채소 상점을 별표 제1호 (생략)와 같이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1959년 5.1절 전으로 설치하고 채소의 도매와 소매를 실시하도록 할 것.
 - ... (2) 각도(평양시,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채소의 상품 생산 계획에 기초하여 상업 기관과 농업 협동 조합들간에 매년 1월 말일까지 품종별 및 월별 또는 순별로 계약(<<제품 공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을 체결하고 수매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15-3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선불하도록 할 것.

[조선중앙연감 1960]

내각 결정 제14호 1960년 3월 15일
국가 수매 체계와 그 경영조직을 개편하며 수매 활동을 강화할 데 관하여(pp.165-166)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적용하게 수매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나라의 인민 경제적 수요와 주민들

의 생활 향상을 더욱 촉진시킬 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생략)
그러므로 수매 사업에 현존한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공업 원료와 주민들의 장성하
는 부식물을 비롯한 일용품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현존 수매 체계를 1960년 4월 20일까지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이다.
 - (1) 일반 용품 및 식료품 수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구역)에 일반 용품 수매 상점과 식료품 수매 상점을, 평양시에는 도매를 기본으로 하는 농부산물 도매 상사를 조직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로동자 지구에도 식료품 상점을 조직하고 그들의 수매 및 도매할 품종을 각각 규정하여 줄 것.
 - (2) 시, 군(구역) 수매 사업소들의 현존 기구를 계획 수매 수행에 적응하게 개편할 것이며, 량곡 수매는 시, 군 인민 위원회 상업 량정 관리부가 직접 담당 수행케 할 것.
 - (3) 현존 수매 기구 체계에서 시 농산물 공급 사업소, 지구 수매품 도매 사업소 및 사회 급양 원자재 공급소는 각각 폐지할 것.
 - (4)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및 내각 사무 총국장은 수매 체계 개편에 따르는 중앙 및 도, 시, 군의 기구 정권과 인민 경제 로력을 상업 부문의 현존 기구 정권과 로력 펀드 내에서 조절하여 줄 것.
2. 상업상은 수매원들과 수매 상점 및 도매 상사 관리 일군들의 수매 활동을 강화하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로동 보수를 수매 실적량에 의한 로임과 리윤에 의한 추가 보수제로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및 재정상과 합의하여 1960년 4월 10일까지 작성 시달할 것이다.
3.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 (1) 협동 경리에서 생산되는 공예작물, 유지 작물, 과일(사과, 배에 한함), 곡초, 고공품 및 육류(개인부업 경리에서 생산되는 대 가축 포함)는 농업 협동 조합들에 계획을 시달하고 시, 군 수매 사업소들이 계획수매를 진행하도록 할 것
 - (2) 계획 수매를 진행하지 않는 일체 품종과 계획 수매를 완수한 생산자들이 자유 판매하려는 계획 수매 품종들도 수매 상점들이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 수매하도록 할 것
4.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은 수매품의 교류 및 공급 사업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 수매 품종과 유색 금속(파연, 파늄, 동합금) 및 원피(소 가죽, 말가죽, 돼지 가죽)는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누데기, 파고무 등 일부 품종에 대하여서는 도 인민 위원회가 공급 계획을 시달하고 그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할 것이며, 이외의 수매 품종은 자유로 처분케 하되 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각 도 소재지 수매 상점들과 평양시 농부산물 도매 상사들에게 기동성 있게 교류 사업을 조직하도록 할 것이다.

5.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일반용품 수매, 상점 및 식료품 수매 상점, 농부산물 도매 상사들의 경영 활동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조직하도록 할 것이다.
 - (1) 수매 상점들과 상사들을 기업관리에서 독자적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 재산체로 조직 운영하되 수매 및 도매 계획은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가 시달하며 재정 계획은 기업소가 자체로 수립하여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도록 할 것.
 - (2) 기업 경영 활동 결과 손실은 기업소 자체가 책임지고 처리케 하며 기업 리익금은 일부만 국고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 류동 자금, 기업소 정리 확장과 사회 문화 시설의 건설, 종업원들의 추가적 로력 보수(상금 포함), 내부 적립금의 조성에 전액 충당하도록 할 것.
 - (3) 수매 상점들의 인민 경제 로력에 대하여는 배급 가격에 의하여 식량을 판매하여 주되 국가의 수매 량곡 판매 가격과 식량 배급 가격과의 차액은 매월 기업소의 부담으로 (류통비에서) 국가 예산에 납부하도록 할 것

6. 조선 중앙 은행 리사회 리사장은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과 련계 밑에 수매 상점 및 상사들에서 필요한 수매 자금을 대부하여 줄 것이며, 경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류동 자금(그 규모는 상업상과 협의하여 별도로 규정할 것)을 1962년 1.4분기까지 기한으로 하는 장기 대부를 하여 줄 것.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수매 상점 및 도매 상사들에게 이관하는 고정 재산을 대여하여 줄 것이다.

7. 상업상은 수매 기업소들의 현존 ()기 계산 제도를 재검토하고 극력히 소화할 데 대한 안을 작성하여 재무상과 합의 밑에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8.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 (1) 내각에서 수매 가격을 제정하여 계획 수매 품종(계획 수매를 완수하고 자유 판매하

는 량곡, 육류 포() 이외의 품종에 대하여서는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수매 가격을 제정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따로 내각의 비준을 받아 제정 실시할 것.

(2) 내각에서 수매 가격을 제정하지 않는 일체 수매 품종들은 수매 기업소들이 해당 지역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자유로 수매하도록 할 것

이와 관련하여 재정상은 지방 원료, ?재로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래 수입금 규모를 재검토하고 개정()을 1960년 4월 30일까지 내각에 제출할 것.

(3) 국영 공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용되는 일부 품종(파철, 유색 금속, 파고무, 합성수지, 공병 등)들에 대하여서는 판매 가격(수매 기관()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상업상이 재정상 및 수요 기업소들의 해당 중앙 기관 책임자들과 합의하여 제정하되 그 판매 가격이 새 제품의 기업소 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재정상이 국가 예산 부담으로 그 차액을 해당 생산 기업소에 보상하여 주도록 할 것.

(4) 국가에서 제정하는 수매 가격은 원칙적으로 유일 가격을 적용하되 가격을 제정하기 곤란하거나 수매 가격을 유일적으로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그 범위에서 수매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

9. 상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전체 수매 부문 일군들에게 수매 사업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그 중요성을 옹계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매 활동에서 필요 이상 가격 설정 등의 경쟁을 제거하고 보다 많은 수매 원천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인민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다.

10. 수매 기업소들의 원활한 수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내각 물자 공급 총국장은 자전거 5000대, 휴대용 저울 5000대, 큰 저울 700대를 5월 말까지 공급 받도록 배정하여 줄 것이며, 조선 중앙 은행 리사회 리사장은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부하여 줄 것이다.

11. 수매 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인계인수 사업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상은 수매 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계 인수 절차를 규정하여 4월 10일전으로 시달할 것이며,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수매사업 담당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계 인수 지도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사업을 4월 25일까지 총화하도록 할 것이다.

12. 본 결정 실시와 관련하여 내각 명령 제84호<<모피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의

수매, 및 가공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1957년 11월 4일)의 별표 제4호<<모피 수매 기준 가격표>>는 폐지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평양시

[조선중앙연감 1961]

내각 결정 제35호

1960년 6월 13일

국가 농목장 작업반들에 독립 채산제를 도입할 데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국가 농목장 작업반들에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여 그의 경영 활동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육류, 채소, 과일 및 알곡 등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며 국가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 농목장일군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 농목장들에서 내부 원천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며 일군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생산 부문의 작업반과 군 종합 농장의 상품 류통, 수매, 공업 및 자재 관리 부문들에 독립 채산제를 도입한다.
2. 별지 <<국가 농목장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3.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재정상 및 농업상은 국가 농목장들에서 토지 개량을 비롯한 일체 기본 건설을 국가 투자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그의 자금 원천은 국가 농목장에 조성된 확대 재생산 기금을 우선적으로 동원시킬 것이다.
4. 농업상 및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은 국가 농목장들에서 작업을 기계화하고 로력을 적극 축소하는 방향에서 알곡 생산과 축산물 생산 및 기타 상품 생산에 대한 1960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과 재정상의 합의를 받아 실시할 것이다.

... 9. 본 결정 실시와 관련하여 내각 결정 제52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영

기업소에 관한 규정>>(1955년 5월 21일)의 제 1장 및 제 4장은 국가 농목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내각 결정 제 24호 <<농업 현물세에 관한 법령 시행 세칙을 승인함에 관하여>>(1959년 3월 9일)로 승인된 시행 세칙 제3조 1항은 이를 폐지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평양시

(별지 <<국가 농목장에 관한 규정>>은 생략함)

[조선중앙연감 1962]

내각 결정 제116호

1961년 7월 20일

국가에 더 많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 생산물을 판매한 농업 협동 조합 및 시, 군(구역)에 영예 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p.185)

... 그리하여 우리 조합원들은 자기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준 우리의 사회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 생산을 현저히 제고하며 육류 및 기타 농업 생산물을 국가에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고도의 애국적 열성과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농업 생산을 현저히 제고하여 국가에 더 많은 알곡, 육류, 채소 및 기타 농업 생산물을 판매하는 농업 협동 조합 및 시, 군(구역)들에 영예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양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과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중앙연감 196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법령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p.59)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만족스럽게 인정하면서 협동 농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일층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동 농장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농업 현물세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완전히 폐지한다.
2. 협동 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던 관개 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 발전소, 전기 시설을 비롯한 모든 생산적 건설과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은 국가 투자로 진행한다.
탈곡기, 사료 분쇄기, 전동기, 양수기, 분무기, 가마니 직1조기 등 모든 농기계는 국가가 협동 농장에 무상으로 공급하며 그 수리도 국가 부담으로 한다.
3. 농촌 문화 주택은 년차 별 계획에 의하여 국가 부담으로 건설한다. 이미 지어 준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4. 협동 농장들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본 법령 실행 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2. 내각지시 제24호

내각지시 제24호 주체92(2003)년 5월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
하도록 방향전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장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2(2003)년 3월 9일과 16일, 4월 3일과 13일, 30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1. 지금 있는 시장들을 규모 있게 꾸리는 한편 새로운 시장들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것이다.

- 1)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의 이름을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으로 부르도록 할 것이다.
- 2) 내각수도건설위원회,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현대적인 시장을 통일거리에 빨리 꾸리도록 할 것이다.
- 3)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범적으로 꾸린 시장을 본보기로 하여 전반적 시장들을 잘 꾸리며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는 시, 군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시장을 꾸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할 것이다.
- 4) 국가건설감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새로 꾸리는 시장들을 지방도시 계획설계에 예견하고 시장표준설계에 기초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도록 할 것이다.
- 5)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예산과 군중적자금원천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 6) 재정성,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들에 시장관리소를 조직하고 시장들을 채산제로 운영하며 시장유지보수와 개건에 필요한 자금은 일정한 규모의 기금을 시장관리소가 조성하여 쓰도록 할 것이다.
- 7) 상업성,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사용료를 매대면적과 위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매일 시장관리소가 받아들이며 국가납부금은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월에 한번씩 재정기관이 판매자들로부터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 8) 재정성은 시장밖이나 집에서 공업상품을 가공하여 넘기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대상, 각종 상품을 되거리하는 사람들을 해당 지역 재정기관들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소득규모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바치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 9) 도인민위원회들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개인들로부터 소득규모에 따르는 국가납부금을 빠짐없이 받아 들일수 있도록 시, 군재정부아래 집금소에 재정부기실무능력이 있는 일군들을 필요한 인원만큼 늘여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성은 시장에서의 국가납부금적용방법을 5월 15일까지 완성하여 내각에 제기 할 것이다.
- 10) 상업성과 해당 기관들을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운영되는데 맞게 중앙으로부터

시, 군에 이르기까지 시장에 대한 정연한 장악지도체계를 세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업성,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현 인원을 조절하여 해당부서들에 필요한 인원들을 늘여 주도록 할 것이다.

2.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도 시장들에서 상품을 팔고 사도록 할 것이다.

- 1)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에서 연유, 생고무를 비롯한 국가전략 물자들과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로산물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하여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과 개인들이 생산하는 상품들과 수입상품들도 팔도록 할 것이다.
- 2) 상업성은 시장에서 팔수 없는 통제품을 시기별로 실정에 맞게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해 줄 것이다.
- 3) 재정성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게 한데 맞게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 현재 적용하는 국가납부금비율을 바로 정하여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3. 시장한도가격과 상품가격을 바로 정해 주고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다.

- 1) 국가가격제정국,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한도가격을 국제시장가격과 환률시세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가격조절의 기초로 되고 있는 쌀, 먹는 기름, 사탕가루, 맛내기 등 중요지표들에 대하여서만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해 줄 수 있게 대책을 세울 것이다.
- 2)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에서 한도가격이상 더 받을 때에는 엄격히 통제하여 한도가격이 시장가격을 점차 낮추는 공간으로 되게 할 것이다.
- 3) 국가가격제정국과 해당 기관들은 국제, 국내시장가격과 환률시세를 정상적으로 료해하여 시, 군들에 통보하여 줄 것이다.
- 4) 상업성, 국가가격제정국과 해당 기관들은 국내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한 상품의 가격을 국영상업망에 넘길 때에는 국정가격으로 하고 시장에 내다 팔 때에는 시장가격을 점차 낮출 수 있도록 시장가격보다 낮게 정하는 원칙에서 시장가격수준으로 정해 주도록 할 것이다.
- 5) 국가가격제정국은 대중소비품이 아닌 희귀상품과 다른 상품가격을 검토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수시로 조절하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4. 국영상업망을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1) 무역성,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립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 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무역성,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을 선정하여 상점을 하나씩 맡아 운영하기 위한 대책안을 만들어 5월 10일까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이다.

2) 무역성, 상업성, 평양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평양제1백화점과 같이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업망들에 대하여는 무역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의 매대 또는 층별로 임대해 주어 수입상품을 팔게도하고 위탁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도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

3) 무역성, 상업성, 국가가격제정국과 해당기관들은 무역회사들이 들여다 구영상점들에서 파는 수입상품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조금씩 낮추는 원칙에서 상품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무역회사와 판매자사이 협정가격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4) 무역성과 해당 기관들은 무역회사들이 전자제품을 비롯한 희귀상품을 외화와 교환한 내화로 판매하여 원금을 상환하게 하며 대중소비품은 내화로 팔도록 할 것이다.

5) 세관총국과 해당 기관들은 수도에 소비상품이 집중될 수 있게 무역회사들에서 수도에 들여 오는 수입상품관세율을 건당 검토하고 특혜조건으로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안을 5월 20일까지 내각에 제기할 것이다.

6) 무역성은 무역회사들의 국영상점운영에서 편향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할 것이다.

재정상은 무역회사들이 국영상점을 하나씩 차지하고 수입상품을 맞아 주는데 맞게 재정처리를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다.

7) 무역성과 해당기관들은 무역회사들이 수입상품을 들여다 개인들에게 비법적으로 넘겨 주는 현상을 없애며 무역회사들에 기관도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다.

8)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주민들이 수매상점을 리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며 수매상점들에서 수매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5. 기관, 기업소들에 일정한 범위의 현금류통을 허용해 줄 것이다.

1) 재정성,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중요설비, 자재는 무현금결

- 재를 하게 하면서 부속품을 비롯한 생산정상화물자와 경영용물자, 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 등을 구입하는데 현금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기가 번 돈의 일정한 범위에서 현금을 쓸 수 있도록 인민경제부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리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집행할 것이다.
 - 3) 재정성, 중앙은행과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 현금리용범위를 넓혀준 조건에서 번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단속통제할 것이다.
6. 국가계획위원회, 노동성과 국가가격제정국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방법과 생활비, 가격제정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안을 상반기 안으로 내각에 제기할 것이다.
 7. 국가계획위원회, 상업성, 재정성, 무역성, 국가가격제정국,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이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다.
- ※ 일본 RENK(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가 입수한 것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번역한 자료

3. 내각결정 제27호 :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내각결정 제27호 주체92(2003)년 5월 5일

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장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장을 적극 장려하며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시장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시장에 대한 지도는 상업성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시장을 내오거나 없애려고 할 경우에는 상업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조직과 관리운영에 대한 실무적지도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가 맡아한다.

제2장 시장의 조직

제4조 시장은 시, 군의 주민수와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한 곳에 한개 또는 그이상 내올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이름은 해당 지역의 지명을 붙여 부른다.

제6조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설계에 예견하고 시장표준설계에 기초하여 실정에 맞게 꾸려야 한다.

시장은 옷설미를 씌우고 바닥은 포장하며 매대와 질보관창고, 상하수도시설, 위생실과 같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시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과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와 개별적 주민들의 자금원천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8조 시장과 그 주변에는 식당, 편의봉사망, 수매상점 같은 봉사망들을 꾸려 놓을 수 있다

제3장 시장의 운영

제9조 시장은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퇴근후에도 시장을 리용할수 있도록 시장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장에서는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로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거나 살 수 있다.

시장에서 팔수 없는 국가통제품은 상업성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 집짐승과 가구류를 비롯한 부피가 큰 상품은 시장건물밖에 따로 장소를 정하고 팔수 있다.

음식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업은 위생조건이 갖추어 진 시장 안이나 시장 밖의 식당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에서 상품은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합의하여 팔고 사며 중요지표의 상품 들은 한도가격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팔고 사야 한다.

한도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환률시세를 고려하며 시장에서 가격조절의 기초로 되고 있는 쌀, 먹는기름, 사탕가루, 맛내기 등 중요지표에 대하여서만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자체실정에 맞게 수시로 정한다.

제13조 시장에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와 개별적 주민들은 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 재정부서에 등록하여 야 하며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을 내야 한다.

시장사용료는 매대면적과 위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 가 발급한 전표에 따라 매일 시장관리소가 받아 붙인다.

국가납부금은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월에 한번씩 재정기 관이 직접 받는다.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인들은 월마다 소득액을 시, 군인민위원회 재정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장에는 은행기관의 저금소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제15조 시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주민은 시장리용질서를 자각적으 로 지켜야 한다.

제4장 도매시장

제16조 도매시장의 운영은 해당 도매소와 시, 군상업관리소가 맡아 한다.

제17조 도매시장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제품, 무역회 사들의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 사사려행자들

이 들어오는 수입상품 같은 것을 직접 현금으로 넘겨 받아 소매단위들에 넘겨 주어야한다.

제18조 도매시장가격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좀 낮게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합의가격으로 한다.

제19조 도매시장들은 서로 상품교류를 할 수 있다.

(20조에서 29조까지는 누락)

제30조 시장안에서 상품판매와 관련한 단속, 통제사업은 시장관리소일군들이 하며 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들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의 시장담당 보안원이 한다.

시장밖에서 장사행위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검열단속 통제기관이 한다.

제31조 시, 군인민위원회는 시장관리소일군들이 시장관리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목인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관리소에서 내보낸다.

제32조 이 규정을 어기고 시장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중성정도에 따라 책임 있는 일군이나 개별적주민이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일본 RENK(북한민중구출긴급행동네트워크)가 입수한 것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번역한 자료

4. 상업성지시 제48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업성지시 제48호 - 주체92(2003)년 5월 2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전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내각지시 제24호 <주체92(2003)년 5월 5일>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장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2(2003)년 3월 3일과 13일, 4월 3일과 13일, 30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꾸리고 운영하도록 방향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1. 시장을 잘 꾸릴 것이다.

- 1)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 군의 주민수와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한 곳에 시장을 한 개 또는 그 이상 꾸리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규모는 주민수가

3만-4만 명되는 시, 군에서 600석,

4만-5만 명되는 시, 군에서 900석,

5만-7만 명되는 시, 군에서 1200석,

주민수가 그 이상 되는 시, 군에서 2000석 정도의 규모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꾸리도록 할 것이다.

- 2)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의 이름을 해당 지역의 지명을 붙여 부르도록 할 것이다.

- 3)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지금 있는 시장들을 보수하거나 개건확장하며 부단히 현대화하도록 할 것이다.

- 4)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은 새로 꾸리는 시장들을 지방도시계획설계에 예견하고 시장표준설계에 기초하여 시, 군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도록 할 것이다.

- 5)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은 통일거리시장이 전국의 본보기시장으로 현대적

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시장관리소의 조직과 로력배치를 비롯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위한 준비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 것이다.

6)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방예산자금과 시장관리소가 적립한 기금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7)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은 시장들에 시장관리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인민경제계획로력을 정확히 배치하도록 할 것이다.

2. 시장관리운영을 개선할 것이다.

1)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을 독립재산제로 관리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2)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을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은 퇴근 후에 시장을 리용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도록 할 것이다.

3)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에서 연유, 생고무를 비롯한 국가전략물자들과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제외한 농토산물과 식료들, 공업품을 비롯한 국영기업소(무역회사, 외화별이사업소 제외), 협동단체, 개별적주민들이 생산한 상품과 여유상품, 수입상품들을 팔고 사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관리소들은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국가통제품들을 상업성에서 제정해 준대로 시장에 공지하도록 할 것이다.

4)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안에서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합의하여 팔고 사도록 하여 중요지표의 상품들은 정해진 한도 가격범위안에 팔고 사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5)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국영기업소(무역회사, 외화별이사업소 제외), 협동단체, 개별적주민들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에 등록하고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철저히 세울 것이다.

- 6)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상업부서가 발급한 시장 사용료전표에 따라 시장관리소가 사용료를 매일 정확히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 7)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국영기업소(무역회사, 외화별이사업소 제외), 협동단체들에서 생산하여 국영상점망들에 넘긴 상품들은 국정소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서 시장가격을 점차 낮추도록 할 것이다.
- 8)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은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운영되는데 맞게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정연한 장악지도체계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은 시장관리소일군들을 잘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3. 국영상점망들을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 1)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은 지금 상품이 없어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망들을 정확히 장악하고 상품보장담보성이 있는 무역회사들에 맞세워 주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은 평양시안의 백화점들과 상점망들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상품이 없어 놓고 있는 상점 또는 백화점의 층과 매대들을 무역회사들에 맞세워주거나 임대하여 주기 위한 분담안을 만들어 상업성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 2)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들은 무역회사들에서 넘겨주는 상품의 가격을 무역회사들과 합의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추어 정하도록 할 것이다.
- 3)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들은 무역회사들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을 때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보유조건을 고려하여 위탁판매도 하도록 할 것이다.

4)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들은 현금을 직접주고 받은 상품을 팔 때에 가격제정기관과의 합의 밑에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 팔면서 총판매수입규모를 맞추도록 하며 위탁받은 상품은 무역회사들과의 런계 밑에 상품의 가격을 수시로 조절하면서 판매하도록 할 것이다.

5)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업소들은 수매상점들을 실정에 맞게 잘 꾸리고 주민들이 적극 리용하도록 할 것이다.

(1) 수매상점들에서 주민들로부터 상품을 수매 받을 때 현금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수매도 하도록 할 것이다.

(2) 수매상점들에서 상품을 수매하는 주민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4. 상업기관, 기업소들에서 현금류통규모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할 것이다.

1)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들은 은행기관과의 런계 밑에 경영용물자구입과 상업망의 보수(시장건설포함) 등에 현금을 쓸 수 있도록 현금리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2)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들은 매일 판매수입금, 봉사료금(시장사용료포함)을 은행에 제때에 입금시키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도록 할 것이다.

5.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서들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들은 이 지시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성

평양시

제정호수 190

제정부수 237

발송번호 48

발송월일 주체92.5.26

회수거일 주체94.12.31

※ 자유복한방송이 입수한 자료